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203, 1204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안일 : 2019. 11. 01.
- 다. 회부일 : 2019. 11. 05.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최종 예산대비 11.5% 증액된 4조 7,172억 7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2019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232,107,916	4,717,277,354	485,169,438	11.5
일반회계	2,780,251,054	3,207,058,067	426,807,013	15.4
200 세외수입	53,485,785	54,437,772	951,987	1.8
210 경상적세외수입	13,851,142	14,004,953	153,811	1.1
220 임시적세외수입	39,634,643	40,432,819	798,176	2.0
300 지방교부세	432,000	170,000	△262,000	△60.6
310 지방교부세	432,000	170,000	△262,000	△60.6
500 보조금	2,713,015,768	3,141,157,563	428,141,795	15.8
510 국고보조금등	2,713,015,768	3,141,157,563	428,141,795	15.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17,501	11,292,732	△2,024,769	△15.2
710 보전수입등	13,317,501	11,292,732	△2,024,769	△15.2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2019대비 증감	증감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6,862	1,510,219,287	58,362,425	4.0
200 세외수입	2,621,059	2,904,857	283,798	10.8
220 임시적세외수입	2,621,059	2,904,857	283,798	10.8
500 보조금	678,571,948	752,308,069	73,736,121	10.9
510 국고보조금등	678,571,948	752,308,069	73,736,121	10.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663,855	755,006,361	△15,657,494	△2.0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은 7조 7,133억 4천 6백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6조 9,911억 2천 7백만원 대비 10.3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2019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3,391,587,716) 6,991,127,380	(×3,893,465,632) 7,713,345,964	(×501,877,916) 722,218,584	(×14.8) 10.3
일반회계	(×2,713,015,768) 5,520,856,076	(×3,141,157,563) 6,188,453,301	(×428,141,795) 667,597,225	(×15.8) 12.1
사업비	(×2,713,015,768) 4,751,294,261	(×3,141,157,563) 5,432,652,483	(×428,141,795) 681,358,222	(×15.8) 14.3
행정운영경비	651,785	590,073	△61,712	△9.5
재무활동비	768,910,030	755,210,745	△13,699,285	△1.8
특별회계	(×678,571,948) 1,470,271,304	(×752,308,069) 1,524,892,663	(×73,736,121) 54,621,359	(×10.9) 3.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8,571,948) 1,451,856,862	(×752,308,069) 1,510,219,287	(×73,736,121) 58,362,425	(×10.9) 4.0
사업비	(×678,521,878) 1,451,756,722	(×752,254,494) 1,510,112,137	(×73,732,616) 58,355,415	(×10.9) 4.0
행정운영경비	(×50,070) 100,140	(×53,575) 107,150	(×3,505) 7,010	(×6.0) 7.0
도시개발특별회계	17,414,442	13,788,442	△3,626,000	△20.8
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00	884,934	△115,066	11.5

○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복지정책실	6,991,127,380	7,713,345,964	722,218,584	10.3
복지정책과	3,115,418,053	3,337,646,126	222,228,073	7.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346,374,267	2,584,440,721	238,066,454	10.1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12,500,623	142,158,867	29,658,244	26.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487,447	12,281,653	794,206	6.9
가사 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2,202,000	2,892,000	690,000	31.3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725,900	23,568,720	842,820	3.7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43,120	124,800	△18,320	△12.8
보훈단체 지원	2,638,100	3,164,100	526,000	19.9
보훈대상자 등 지원	52,402,960	57,870,600	5,467,640	10.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587,000	673,000	86,000	1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1,130,040	1,375,954	245,914	21.8
서울형 기초보장	19,184,056	20,073,540	889,484	4.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0	20,134,500	20,134,500	10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10,609,415	827,996,586	117,387,171	16.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696,995,733	817,011,732	120,015,999	17.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5,441,685	4,922,665	△519,020	△9.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8,171,997	6,062,189	△2,109,808	△25.8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6,614,174	65,050,398	28,436,224	77.7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70,557	1,175,227	104,670	9.8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70,541	957,464	△113,077	△10.6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0	300,000	300,000	100.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123,200	98,200	△25,000	△20.3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12,014	501,142	89,128	21.6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5,017,124	30,627,281	5,610,157	22.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운영	8,370,738	31,391,084	23,020,346	275.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4,893,333	39,122,733	4,229,400	12.1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100	35,100	0	0.0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2,359,068	38,635,584	6,276,516	19.4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397,165	452,049	54,884	13.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756,722	1,510,112,137	58,355,415	4.0
의료급여사업	1,449,326,662	1,507,708,287	58,381,625	4.0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2,430,060	2,403,850	△26,210	△1.1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471,838	410,190	△61,648	△13.1
기본경비	371,698	303,040	△68,658	△18.5
기본경비	371,698	303,040	△68,658	△18.5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140	107,150	7,010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1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업)	100,140	107,150	7,010	7.0
일반예산(재무활동)		768,571,948	752,795,215	△15,776,733	△2.1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768,571,948	752,488,069	△16,083,879	△2.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768,571,948	752,308,069	△16,263,879	△2.1
	전출금(독립유공자 상허수도 요금 감면)	0	180,000	180,000	10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	307,146	307,146	100.0
	국고보조금 반환	0	307,146	307,146	100.0
지역돌봄복지과		245,342,954	261,587,926	16,244,972	6.6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245,290,508	261,530,462	16,239,954	6.6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95,579,645	98,982,640	3,402,995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888,708	3,888,708	0	0.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1,036,937	94,433,782	3,396,845	3.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650,000	660,150	10,150	1.6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5,021,344	3,784,826	△1,236,518	△24.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315,408	422,023	106,615	33.8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705,936	3,362,803	△1,343,133	△28.5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44,689,519	158,762,996	14,073,477	9.7
	긴급복지지원사업	27,678,000	26,794,500	△883,500	△3.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0,210,000	12,307,000	2,097,000	20.5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1,009,000	1,267,800	258,800	25.6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1,366,260	1,366,261	1	0.0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	2,661,000	2,735,400	74,400	2.8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리비	225,000	225,000	0	0.0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리비	2,671,200	2,671,200	0	0.0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94,221,314	97,321,857	3,100,543	3.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14,000	13,000	△1,000	△7.1
	고독사 예방사업	675,000	875,000	200,000	29.6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65,545	13,035,978	9,970,433	325.2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320,000	150,000	△170,000	△53.1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지역돌봄지원과)		52,446	56,464	4,018	7.7
	기본경비	52,446	56,464	4,018	7.7
	기본경비	52,446	56,464	4,018	7.7
일반예산(재무활동)		0	1,000	1,000	100.0
	보전지출	0	1,000	1,000	100.0
	반환금 및 기타	0	1,000	1,000	100.0
어르신복지과		2,263,467,625	2,585,459,124	321,991,499	14.2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263,329,779	2,585,405,814	322,076,035	14.2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36,374,250	251,191,069	14,816,819	6.3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5,803,695	6,625,073	821,378	14.2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6,250,733	7,267,175	1,016,442	16.3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1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80,608,243	192,057,000	11,448,757	6.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7,105,591	2,582,424	△4,523,167	△63.7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4,710,000	20,311,000	5,601,000	38.1
어르신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5,871,162	15,695,500	△175,662	△1.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70,000	170,000	0	0.0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5,854,826	6,482,897	628,071	10.7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1,957,368,514	2,239,865,705	282,497,191	14.4
기초연금 지급	1,954,972,988	2,237,353,019	282,380,031	14.4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395,526	2,512,686	117,160	4.9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840,056	54,508,997	17,668,941	48.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480,152	5,670,474	190,322	3.5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185,276	1,406,502	221,226	18.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185,408	188,224	2,816	1.5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700,000	2,766,013	66,013	2.4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3,338,100	4,269,184	931,084	27.9
혹서, 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시민참여)	0	250,000	250,000	1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3,924,120	39,958,600	16,034,480	67.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2,746,959	39,840,043	7,093,084	21.7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7,428,959	28,070,043	641,084	2.3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2,068,000	6,542,000	4,474,000	216.3
시립묘지 유지관리(5개소)	550,000	550,000	0	0.0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700,000	4,678,000	3,978,000	568.3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1,846	53,310	1,464	2.8
기본경비	51,846	53,310	1,464	2.8
기본경비	51,846	53,310	1,464	2.8
인생이모작지원과	292,964,341	313,558,465	21,594,124	7.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91,927,292	311,847,771	19,920,479	6.8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88,337,659	211,745,389	23,407,730	12.4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582,026	3,354,543	772,517	29.9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46,124,730	165,225,033	19,100,303	13.1
보람일자리 사업	10,916,000	10,916,000	0	0.0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4,164,789	16,364,655	2,199,866	15.5
50+센터 확충 및 운영	6,048,520	5,325,940	△722,580	△11.9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1,244,138	1,595,548	351,410	28.2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2,670,940	4,355,000	1,684,060	63.1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4,393,316	4,608,670	215,354	4.9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17,414,442	13,788,442	△3,626,000	△20.8
50+캠퍼스 확충	17,414,442	13,788,442	△3,626,000	△20.8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86,175,191	86,313,940	138,749	0.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5,570,327	36,721,363	1,151,036	3.2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1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8,992,297	30,960,084	1,967,787	6.8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4,040,448	13,101,676	△938,772	△6.7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2,000	242,000	△150,000	△38.3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739,987	4,266,457	△1,473,530	△25.7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887,872	733,120	△154,752	△17.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84,460	289,240	4,780	1.7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7,049	38,513	1,464	4.0
	기본경비	37,049	38,513	1,464	4.0
	기본경비	37,049	38,513	1,464	4.0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0	1,672,181	1,672,181	100.0
	보전지출	0	1,672,181	1,672,181	100.0
	국고보조금 반환	0	1,672,181	1,672,181	100.0
장애인복지정책과		236,934,043	263,855,814	26,921,771	11.4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36,739,221	263,800,992	27,061,771	11.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68,943,019	188,946,481	20,003,462	11.8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0	3,056,886	3,056,886	1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4,622,078	12,688,934	△1,933,144	△13.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9,821,231	22,082,830	2,261,599	1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10,818,263	11,959,312	1,141,049	10.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0,095,441	111,287,421	11,191,980	11.2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390,490	1,604,544	214,054	15.4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200	67,200	0	0.0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1,262,677	1,060,642	△202,035	△16.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4,843,386	4,587,005	△256,381	△5.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420,000	268,000	△152,000	△36.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시비)	90,000	90,000	0	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0,026,500	10,026,500	0	0.0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0	975,000	975,000	100.0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790,000	520,000	△270,000	△34.2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293,646	303,646	10,000	3.4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985,077	1,285,277	300,200	30.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44,000	44,000	0	0.0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지원	44,000	44,000	0	0.0
	성인권 교육 지원	36,000	36,000	0	0.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0	260,000	260,000	100.0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0	500,000	500,000	10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0	6,100,324	6,100,324	100.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5,030	98,960	83,930	558.4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62,288,748	71,372,639	9,083,891	14.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957,345	884,958	△72,387	△7.6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1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7,602,681	42,060,828	4,458,147	11.9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55,010	1,778,952	23,942	1.4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748,528	2,082,133	333,605	19.1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2,079,705	3,080,792	1,001,087	48.1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3,971,277	4,820,774	849,497	21.4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12,535,852	14,850,334	2,314,482	18.5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517,851	713,869	196,018	37.9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1,120,499	1,099,999	△20,500	△1.8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619,800	1,444,800	△175,000	△10.8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619,800	1,444,800	△175,000	△10.8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3,887,654	2,037,072	△1,850,582	△4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152,263	922,269	△1,229,994	△57.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034,333	205,357	△828,976	△80.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701,058	909,446	208,388	29.7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4,822	54,822	0	0.0
	기본경비	54,822	54,822	0	0.0
	기본경비	54,822	54,822	0	0.0
	장애인자립지원과	669,101,662	749,785,797	80,684,135	12.1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668,945,507	749,741,724	80,796,217	12.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639,499,902	723,577,558	84,077,656	13.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8,356,700	18,356,700	0	0.0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217,600	216,800	△800	△0.4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3,295,948	3,293,230	△2,718	△0.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2,040,322	14,833,890	2,793,568	23.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385,364	4,056,338	670,974	19.8
	장애인복지관 운영	83,008,341	86,911,720	3,903,379	4.7
	여성장애인 교육	344,446	372,804	28,358	8.2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8,180,561	7,867,713	△312,848	△3.8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6,779,012	6,950,104	171,092	2.5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396,959	404,924	7,965	2.0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97,400	97,400	0	0.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5,658,389	5,545,860	△112,529	△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75,537,485	353,836,416	78,298,931	28.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584,329	584,329	0	0.0
	장애수당△기초	18,254,000	18,584,000	330,000	1.8
	장애수당△차상위 등	10,822,000	10,994,000	172,000	1.6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3,920,000	13,920,000	0	0.0
	중증장애인연금	139,149,838	148,680,277	9,530,439	6.8
	장애인의료비 지원	6,441,630	5,366,140	△1,075,490	△16.7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11,650	114,863	3,213	2.9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1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530,587	540,511	9,924	1.9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554,852	560,779	5,927	1.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34,000	245,200	11,200	4.8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604,430	1,715,988	111,558	7.0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145,838	152,972	7,134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334,880	356,320	21,440	6.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65,000	2,470,126	405,126	19.6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700,000	740,000	40,000	5.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68,200	232,200	△36,000	△13.4
지적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46,569	150,366	3,797	2.6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120,000	120,000	0	0.0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380,000	380,000	0	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238,000	7,573,688	3,335,688	78.7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운영지원	858,000	806,000	△52,000	△6.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00,000	6,060,000	5,560,000	1112.0
지역사회 장애인·비장애인 관계형성 기반 구축 (한우리잡화점의 가적)(시민참여)	0	15,000	15,000	100.0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0	470,900	470,900	100.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7,292,124	4,726,655	△2,565,469	△35.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112,413	2,661,811	△3,450,602	△56.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365,507	192,883	△172,624	△47.2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704,204	1,317,961	613,757	87.2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110,000	554,000	444,000	403.6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22,153,481	20,552,577	△1,600,904	△7.2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805,064	2,571,704	766,640	42.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8,402,306	17,980,873	△421,433	△2.3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균등)	0	884,934	884,934	100.0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0	884,934	884,934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44,073	44,073	0	0.0
기본경비	44,073	44,073	0	0.0
기본경비	44,073	44,073	0	0.0
지활지원과	167,898,702	201,452,712	33,554,010	20.0
노숙인 보호 및 지활지원	55,349,452	57,545,670	2,196,218	4.0
노숙인 지활지원	30,860,302	31,017,411	157,109	0.5
거리노숙인 보호	7,431,027	9,670,892	2,239,865	30.1
노숙인 등 알자리지원	10,320,112	9,406,064	△914,048	△8.9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233,406	2,369,632	136,226	6.1
쭉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쭉방상담소 운영 지원)	5,134,253	3,616,754	△1,517,499	△29.6
노숙인 등 의료지원	5,060,404	5,272,969	212,565	4.2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681,100	681,100	0	0.0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19년 최종예산	2020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489,150	26,528,259	2,039,109	8.3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229,919	9,868,978	△1,360,941	△12.1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214,920	4,243,838	28,918	0.7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347,075	8,482,479	1,135,404	15.5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1,108,316	900,256	△208,060	△18.8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588,920	3,032,708	2,443,788	415.0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12,509,399	143,124,842	30,615,443	27.2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12,509,399	143,124,842	30,615,443	27.2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47,880	558,040	10,160	1.9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7,309,940	9,903,871	2,593,931	35.5
자활근로사업 지원	84,691,973	109,560,880	24,868,907	29.4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280,959	257,436	△23,523	△8.4
자활장려금	6,659,782	4,936,385	△1,723,397	△25.9
희망키움통장Ⅰ	2,362,500	3,107,322	744,822	31.5
희망키움통장Ⅱ	7,012,100	8,880,000	1,867,900	26.6
내일키움통장	554,796	603,108	48,312	8.7
청년희망키움통장	2,520,144	3,088,800	568,656	22.6
청년저축계좌	0	2,229,000	2,229,000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39,851	39,851	0	0.0
기본경비	39,851	39,851	0	0.0
기본경비	39,851	39,851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0	742,349	742,349	10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0	742,349	742,349	100.0
국고보조금 반환	0	742,349	742,349	1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II. 기금운영계획안

-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의 2019년도말 총 조성액은 3,137억 6천만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56억 5천 1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9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총 계		320,833	8,576	15,651	-7,073	313,760
사 회 복 기 금	소 계	46,102	3,582	7,511	-3,928	42,174
	노인복지계정	12,863	356	952	△596	12,267
	장애인복지계정	25,491	2,796	5,525	△2,729	22,762
	자활계정	7,748	430	1,034	△603	7,14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4,731	4,994	8,140	△3,145	271,586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 각 기금별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9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2천2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억 1천 9백만원(전년대비 증 5백만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2천만원(전년대비 증 1천만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3천 9백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억 5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경로효친 행사지원 2천 7백만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천만원,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1억만원, 어르신 지도자육성 1억 6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천 8백만원(전년대비 1천 8백만원), 어르신 주거지원 9천만원(전년대비 감 1천만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55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64%(25억만원) 증액 편성된 바,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48억만원(전년대비 증 25억만원), 기금관리비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10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7%(1억 9천 1백만원) 증액 편성된 바,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7천 1백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자활교육훈련 1억 6천 1백만원(전년대비 증 6천만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억 8천 4백만원(전년대비 증 8천 6백만원), 자활유통활성화 5천 8백만원(전년대비 증 5백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2억원(전년대비 △1억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억 5천 5백만원(전년대비 증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1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1%(8억1천5백만원) 증액 편성된 바, 이재민 재해보상에 3억 4천 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27억 8천만원(전년대비 증 23억 7천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에 50억 1천 2백만원(전년대비 △15억 5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세입 예산안 검토

-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세입예산은 총 4조 7,172억 7천 7백만원으로 '19년 세입예산은 총 4조 2,321억 8백만원보다 4,851억 6천 9백만원 증액 (11.5%) 편성되었음.

〈2020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증감액	비 율(%)
계	4,232,108	4,717,277	485,169	11.5
일 반 회 계	2,780,251	3,207,058	426,807	15.4
특 별 회 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51,857	1,510,219	58,362	4.0

〈 2020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합 계	2,780,251	3,207,058	426,807	15.4%	
재산임대수입	1,126	1,258	132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34 → 132백만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157 → 154백만원) •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 (433 → 436백만원) • 50+재단 및 캠퍼스 임대수입 (394 → 528백만원) •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 (7 → 8백만원)
수수료수입	33	34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33 → 34백만원)
사업수입	12,443	12,281	△16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추모공원 주차장수입 (75 → 74백만원) • 시립승화원·추모공원 기타수입 (12,368 → 12,207백만원) ※ 확장료, 봉안사용료, 봉안·분묘관리비, 자연장 사용료, 봉안함 판매수입
이자수입	250	432	182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250 → 432백만원)
기타수입	36,630	37,562	93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품매각대 (19 → 9백만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매각대금 •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반납 (28,595 → 29,715백만원) •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449 → 4,647백만원) •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2,567 → 3,19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3,004	2,870	△134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437 → 2,567백만원) •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 (567 → 303백만원)
지방교부세	432	170	△262	△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강화 (270 → 0백만원)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162 → 170백만원)
국고보조금등	2,713,016	3,141,158	428,142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2,697,379 → 3,125,435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68 → 9,301백만원) • 기금 (7,268 → 6,421백만원)
전년도이월금	13,158	11,205	△1,953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158 → 11,205백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60	88	△71	△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160 → 88백만원)

〈 2020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9년 (최종예산)	2020년(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합 계	1,451,857	1,510,219	58,362	4.0%	
세 외 수 입	2,621	2,905	284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징수 (96백만원 → 144백만원) •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 (2,525백만원 → 2,761백만원)
국 고 보 조 금	678,572	752,308	73,736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678,572백만원 → 752,30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770,663	755,006	△15,65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2,091백만원 → 2,698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768,572 → 752,308백만원)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2,070억 5천 8백만원으로 2019년도 2조 7,805억 5천 1백만원보다 4,268억 7백만원 증액(21.8)되었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임대료 132백만원)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154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436백만원) 및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8.2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서, 12억 5천 8백만원(전년대비 11.7%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재산임대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재산임대수입	1,126,284	1,258,085	131,801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34백만원 → 132백만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157백만원 → 154백만원) • 50+재단 및 캠퍼스 임대수입 (394백만원 → 528백만원) •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 (434백만원 → 436백만원) •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 (7.3백만원 → 8.2백만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립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립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

- 수수료 수입은 승화원과 추모공원 제증명 수수료(화장 및 납골증명 등 증지수입)를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추계는 다음 표와 같음.

〈2020년 수수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수 수 료 수 입	32,626	33,826	1,200	3.7%	○ 시립승화원 제증명 수입 21,809 ○ 서울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12,017

- 2020년 추계액 : 33,826천원
- 산출내역
 - .시립승화원 : 행려제외 예상화장건수(35,869건) × 1건당 증명발급건수(1.52) × 400원 = 21,809천원
 - .추모공원 : 예상화장건수(18,660건) × 1건당 증명발급건수(1.61) × 400원 = 12,017천원

〈2020년 사업수입(주차장 수입 및 그외) 세입추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사 업 수 입	12,442,650	12,280,977	△161,673	△1.3	○ 서울추모공원 주차장 수입 74,151 ○ 시립승화원 화장료 수입 6,490,656 ○ 서울추모공원 화장료 수입 2,779,433 ○ 시립승화원 재사용료 부과 72,747 ○ 시립승화원 봉안관리비 수입 1,134,494 ○ 시립승화원 봉안사용료 수입 210,850 ○ 시립승화원 봉안함 판매수입 227,589 ○ 시립승화원 분묘관리비 수입 314,192 ○ 서울추모공원 봉안함 판매수입 176,865 ○ 시립승화원 자연장 사용료 수입 800,000

- 2020년 추계액 : 12,280,977천원
- 산출내역 : 20년도 예상화장건수 X '16년도 화장 1구당 평균 개인차량 이용건수 X 1건당 평균 주차료
 - 17,080건(화장) x 2.14건 x 2,031원 = 74,235천원
 *시립승화원 2017년부터 무료화로 2018년도부터 예산편성 제외

〈2020년 기타사업수입 세입추계〉

- 2020년 추계액 : 12,930,394천원
- 산출내역
 - 화장료 수입 : 10,281,227천원(승화원 7,528,003천원, 추모공원 2,753,224천원)
 (168년도 일평균 화장현황×365일×서울시, 전국 평균 화장증가율 1.03)
 - 봉안 사용료 : 188,350천원(최근 4개년간 봉안현황 평균치 산정)

- 봉안 관리비 : 646,273천원(18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분묘 관리비 : 95,003천원(18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자연장 사용료 : 1,243,500천원('16년 자연장 이용실적 반영)
 - * (일반) 2,266건 × 500천원 = 1,133,000천원
 - *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442건 × 250천원 = 110,500천원
- 봉안함 판매수입 : 476,041천원(승화원 : 247,607천원, 추모공원 : 228,434천원)
 - (16년도 화장 1구당 평균 봉안함 수입금 × 18년도 예상화장건수)
 - * 승화원 봉안함 판매 사용료 : 35,985건(화장)X0.33건X20,851원=247,607천원
 - * 추모공원 봉안함 판매 수수료 : 17,610건(화장) X 0.43건X30,167원 = 228,434천원

○ 기타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 시설 시비보조금 진행 잔액 반납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증감률이 2.5%를 나타내고 있음.

〈기타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기 타 수 입	36,630,499	37,562,423	931,92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품매각대 (19 → 9백만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매각대금 •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반납 (28,595 → 29,715백만원) •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449 → 4,647백만원) •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2,567 → 3,19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20억 5천만원)과 승회원 체납관리비 수입(3억 3천만원) 및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5억 1천 7백만원)을 반영한 세입 편성안임.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지난연도수입	3,004,144	2,870,396	△133,748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437 → 2,567백만원) • 승회원 체납관리비 수입 (567 → 303백만원)

○ 국고보조금

- 202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5.8% 증액한 3조 1,411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국고보조금 등	2,713,015,768	3,141,157,563	428,141,795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2,697,379 → 3,125,435백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68 → 9,301백만원) • 기금 (7,268 → 6,42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020년도 복지정책실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0,432백만원)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전년 예산(8천8백만원) 대비 △15.2% 감액된 112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9년	2020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317,501	11,292,732	△2,024,769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56백만원 → 10,432백만원) •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236백만원 → 88백만원)

※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사업은 2009년과 2010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개월 거치·54개월 상환기간 조건으로 융자된 것인 바, 2009년 융자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0년 수혜자는 2016년부터 연체지급 의무를 부담함.

- 2020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사업의 징수액을 추계할 때, 2018년부터는 상환완료자 및 개인파산으로 상환불능자와 연체자 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까지의 전망액보다 더 높은 할인율(감액비율 0.7)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산출 내역〉

- 2020년 추계액 : 88,000천원
- 산출내역 : '19년도 징수액 × 0.7(감액비율 적용)
 - 상환완료자, 개인파산으로 상환불능자, 연체자 등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7년도 전망액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간 세부 내역별 징수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04,152	410,849	336,600	132,998	77,001
융자금 원금 회수	604,152	410,849	336,600	132,998	77,001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의 1조 4,518억 5천 9백만원에 비해 14.6% 증액된 1조 5102억 1천 9백만원을 증액(전년대비 증 583억 6천 2백만원) 편성하였음.

〈2020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9년	2020년(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계	1,451,859	1,510,219	58,362	4.01	
세외수입	2,621	2,905	284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제29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43,877 ○ 의료급여사업 기타 접수입 2,760,980
보조금	678,572	752,308	73,736	10.9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752,308,06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70,664	755,006	△15,65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2,698,292 ○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52,308,069

-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63억원 감액 편성 (768,572백만원→752,308백만원)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19년 추경 당시 '18년 시비매칭분 9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19년 전입금 768,572백만원에서 90,000백만원을 제외하고 순수 '19년 시비매칭분 678,572백만원과 비교하면 '20년 전입금은 73,736백만원 증가함
- 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19년 249,257명 → '20년 249,798명)와 인당 평균 진료비가 증가('19년 5,814천원 → '20년 6,035천원)한 결과라고 하겠음.

○ 과징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과징금 수입에 대한 결산 내역과 세입 추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445,303	449,805	534,862	536,877	549,211	554,777	630,291	369,197	774,092	757,911

※ 국고보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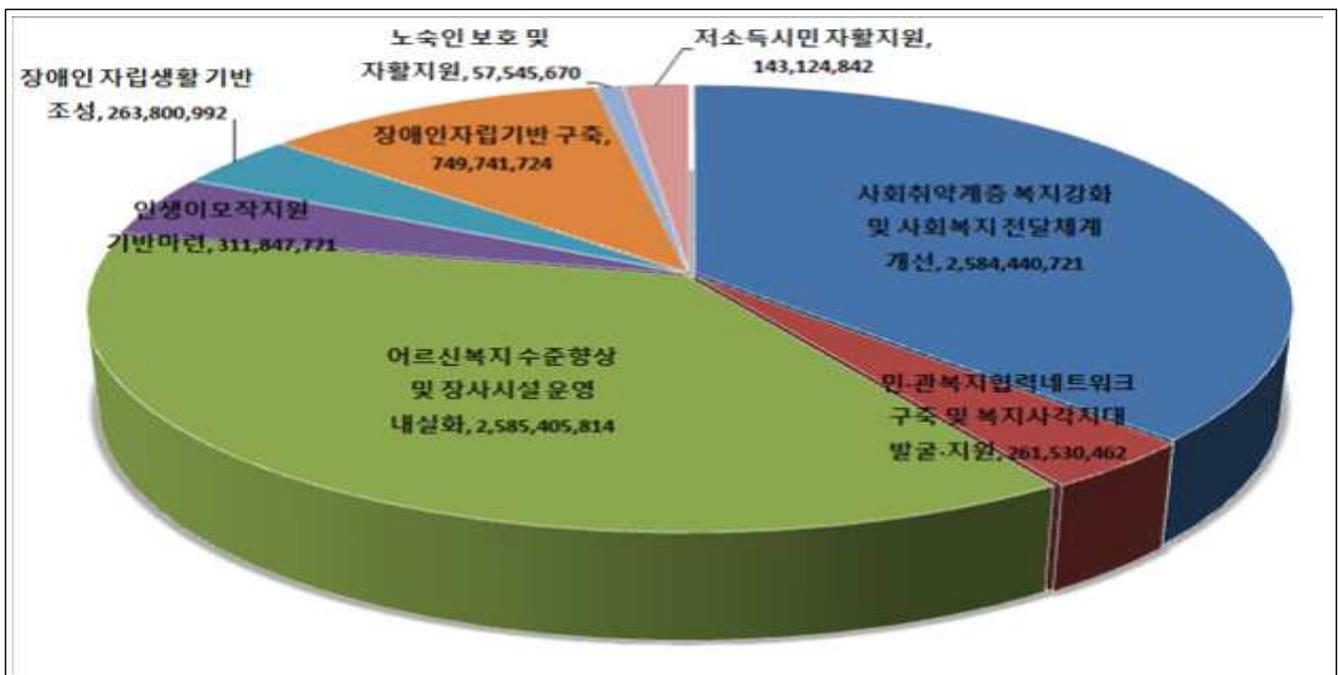
〈2020년 과징금 세입추계〉

- 2020년 추계액 : 37,674천원
- 산출내역: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수입

2 세출 예산안 검토(조직별 예산안 총괄적 검토)

- 2020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7,222억 1천 9백만원 증액된(10.3%)전체 7조 7,13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정책별로 구분하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에 2조 5,844억원(10.1%),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정책사업에 2,615억원(6.6%),
-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정책 사업에 2조 5,854억원(14.2%), 50+세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정책사업에 2,117억원(6.8%),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정책사업에 2,638억원(11.4%),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7,497억원(12.1%)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 사업 운영지원 정책사업에 2,006억원(2.6%) 순으로 편성하였음.

〈2019년도 복지본부 정책별 예산 규모 현황〉



가.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3조 1,154억 1천8백만원에서 7.1 증가된 3조 3,376억 4천6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468,000) 2,202,000	(×1,928,000) 2,892,000	(×460,000) 690,000	31.3%
보훈단체 지원	2,638,100	3,164,100	526,000	19.9%
보훈대상자 등 지원	52,402,960	57,870,600	5,467,640	10.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587,000	673,000	86,000	1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415,020) 1,130,040	(×462,977) 1,375,954	(×47,957) 245,914	21.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469,456,000) 696,995,733	(×551,772,000) 817,011,732	(×82,316,000) 120,015,999	17.2%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12,014	501,142	89,128	21.6%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1,826,108) 25,017,124	(×27,237,275) 30,627,281	(×5,411,167) 5,610,157	22.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240,000) 8,370,738	(×951,200) 31,391,084	(×△288,800) 23,020,346	275.0%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2,359,068	38,635,584	6,276,516	19.4%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397,165	452,049	54,884	13.8%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71,560) 143,120	(×62,400) 124,800	(×△9,160) △18,320	△12.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8,171,997	6,062,189	△2,109,808	△25.8%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70,541	957,464	△113,077	△10.6%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123,200	98,200	△25,000	△20.3%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 신규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6,040,350) 20,134,500	(×6,040,350) 20,134,500	100.0%

1) 신규 사업

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서 73p.)

(1) 현황

- 위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로 시행된 사업임. 주요 목적은 재난으로 규정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마스크 구매 비용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임.

보건복지부 「2019년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추정사업」 개요

- 추경예산액(국고) : 19,375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30%, 기타 50%
- 지원대상 : 저소득층 234만명(서울 382,785명)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지원내용 : 보건용 마스크, 1인당 18매 보급

- 2019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시비 매칭분인 4,823백만원(국비 2,067백만원) 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왔음.
- '20년도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총 402,69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생활인원에게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임

※ 마스크 보급 대상 ('19년 7월, 행복e음 통계 기준)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아동	정신질환	결핵한센	어르신	장애인
소관실국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지원여부	지원대상			자체 지원 예정		기지원	
지원인원	297,179명	91,718명	3,130명	-		-	
지원예산	5,223백만원	1,612백만원	55백만원				

(2) 검토의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1)에서도 “국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예산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적절성 및 확대 등에 대해서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연도별 발령현황〉

년도	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2016	6	7	0	0
2017	6	10	0	0
2018	5	6	1	1

·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연도별 발령현황〉

년도	주의보		경보	
	발령횟수	발령일수	발령횟수	발령일수
2016	0	0	0	0
2017	5	10	0	0
2018	8	18	0	0

·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2) 주요 증감사업

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서 117p.)

(1) 현황

- 위 사업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공공성 강화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확대 및 종합재가센터 12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개소, 어린이집 5개소 운영을 위하여 304억 3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장기요양시설 개소 현황〉

장기요양시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공립(개소)	215	225	203	230	228	220
개인(개소)	11,113	10,946	11,080	11,730	12,569	13,99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9년 81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동종합재가센터('19.7.23.개소, 간호특화형)를 시작으로 은평종합재가센터('19.8.28.개소, 기본형), 강서종합재가센터('19.9.18.개소, 기본형), 노원종합재가센터('19.10.23, 확대형)을 개소하였고, 기본형과 주야간보호 유형으로 '19년 12월 마포종합재가센터가 개소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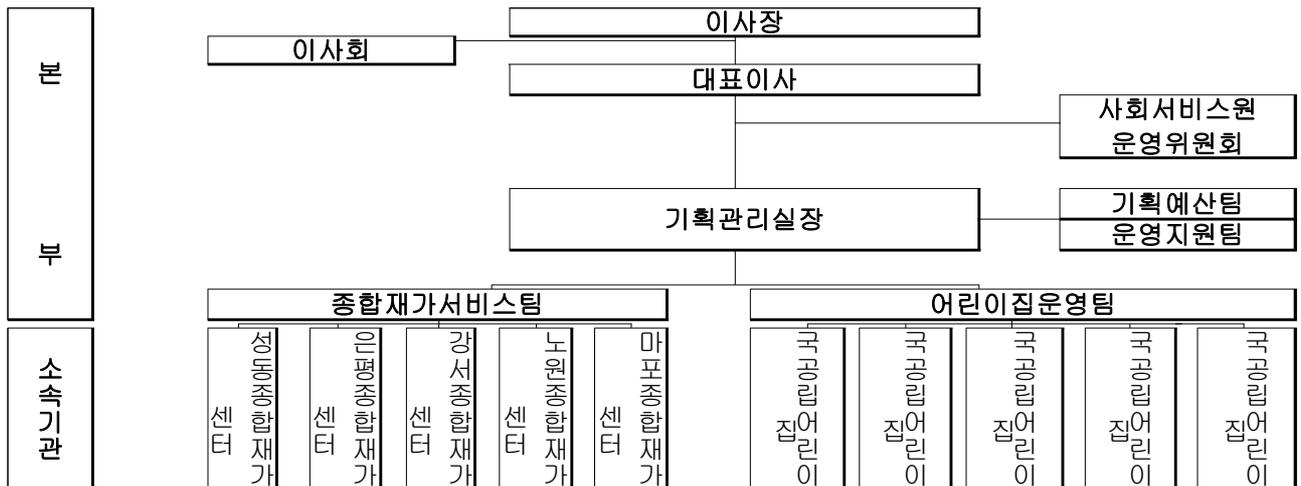
- '19년도 권역별 5개소 순차적 설치 및 시범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25개 전 자치구로 단계적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20년에는 12개소(신규7개소)의 종합재합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시설기반 재가 사회복지사업과 바우처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 자치구별 돌봄 SOS 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과 활동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함.

〈연도별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계획〉

구 분	계	2019	2020	2021
계	25	5	8	12

- 집행부가 제출한 '20년 조직 및 인력운영(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 본부 구성은 1원 2본부 5팀으로 인력 규모는 검토 중에 있으며 산하시설로 종합재가센터 및 국공립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산하시설 사업대상 및 운영 규모는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추후 확정 예정이라고 함.

〈조직현황〉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검토

(가) 사업 운영에 대한 검토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은 2가지 형태인 기본형(방문요양(목욕))과 확대형(기본형+장애인활동지원)으로 서비스운명을 시행함.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출원하였으나, 현재 자치구간 서비스 모형이 각각 기본형·확대형으로 달라 사회서비스가 자치구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등 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특화서비스로 야간순환서비스를 지원하다고 하고 있는 바, 활동지원사가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야간순회서비스 제공 시에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사전 파악이 가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돌봄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때때로 야간에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바 현재 주52시간 노동에 따라서 서비스대상자는 1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시간대 별로 다를 수 있어 서비스대상자가 다인 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 각각의 서비스제공인력간의 전문성, 동일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서비스대상자가 직접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 정책방향〉

구 분		표 준 운 영 모 델																	
정 책 방 향	좋은돌봄	-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좋은일자리	-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정규직, 직접고용, 월급제																	
	센터 유형	- 기본형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은평센터, 강서센터) - 확대형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장애인활동지원(노원센터) - 간호특화형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성동센터) - 통원형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 주야간보호(마포센터)																	
	주요 서비스내용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 전문서비스 : 방문간호, 물리·작업재활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 긴급돌봄 : 돌봄SOS센터 연계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서 비 스	팀제 협력서비스	-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3명이 어르신 6명 케어 -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26명이 장애인 18명 케어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팀제 협력서비스 제공																	
	특화 서비스	- 방문요양(SOS긴급돌봄, 방문간호·방문목욕 결합) - 장애인활동지원(중증장애인이야간순회, 물리치료·작업치료·방문간호 결합) 등																	
	정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20%;">기본형</th> <th style="width: 20%;">확대형</th> <th style="width: 20%;">간호특화</th> <th style="width: 20%;">통원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초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47</td> <td style="text-align: center;">49</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완성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68</td> <td style="text-align: center;">184</td> <td style="text-align: center;">194</td> <td style="text-align: center;">84</td> </tr> </tbody> </table>					기본형	확대형	간호특화	통원형	초기	17	47	49	30	완성기	68	184	194
	기본형	확대형	간호특화	통원형															
초기	17	47	49	30															
완성기	68	184	194	84															
인 력 안 정	근로기준법 준수	- 24시간 4조3교대제 :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대상적용 - 휴게시간 : ① 이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방문간호 등 특화서비스 활용 휴게시간 확보 ② 파트타임 직원 활용 휴게시간 확보																	
	팀장제 운영	-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 - 요양팀장 : 1팀장 2개조(1조:15명)관리 - 활동지원팀장 : 1팀장 2개조(1조:25명)관리																	
	직책별 역할	- 센터장: 센터 총괄 - 파트장: 사례관리 총괄 - 팀장: 팀원 관리, 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 관리																	
	민간곤란 서비스수행	- 공공기관으로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하기 곤란한 대상에 대해 적극 수행 (1:1 매칭으로 서비스 수행이 곤란한 최종중장애인 등 1:2서비스)																	
HO HO 서	민간기관 지원	- 표준운영모델 등 서비스 매뉴얼 배포 -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활용 민간기관 교육지원 등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서울시 신축예정인 1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탁·공모에 참여하여 현재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9월), 서대문 어린이집(10월),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11월)은 3개소 수탁을 확정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 예정임.
- 서비스원에서 제출한 내년도 계획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3개소만 확정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수탁 자체가 미정인 상태임.
- 이는 20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개소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개소되었거나 개소될 예정인 종합재가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하여 사업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연도별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계획〉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요양시설(시/구립)	6	-	-	4	2
어린이집(구립)	15	-	5	5	5

(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서비스원의 '20년 재단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출연금의 67%의 비중을 본부(7%) 및 소속기관(60%)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원의 소속기관 확대 개소에 따른 직원 증가 계획안은 단순한 양적 확대라는 우려가 있으며,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앞으로 수가수익 등과 보조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여도 출연금의 지속적 확대는 서울시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

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20년 총8개구(강동, 광진, 도봉, 서대문, 송파, 양천, 영등포, 중랑)개소

〈2020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비중)	단위사업	'19년	'20년	증감사유
인 건 비 (본 부) <7%>	연 봉 급	402	1,987	- 본부 직원 증원 예산 반영(22명→50명)
	연 봉 외 수 당	98	568	
	법 정 부 담 금	46	263	
	퇴 직 급 여	37	213	
인 건 비 (소 속 기 관) <60%>	연 봉 급	1,768	15,761	- 소속기관 확대 개소에 따른 직원 증가 (550명→859명) 인건비 반영 (종합재가센터 5→12개소, 어린이집 5개소)
	연 봉 외 수 당	246	5,722	
	법 정 부 담 금	213	2,216	
	퇴 직 급 여	171	1,790	
보 조 금 사 업 <7%>	교 육 훈 련 비	189	339	- 소속기관 확대 개소에 따른 직원 증가 (550명→859명) 교육비 반영 (1억5천만원 증액)
	복 리 후 생 비	81	0	- 본부운영지원의 '복리후생비'항목으로 이동 편성(종사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사 무 관 리 비	100	0	- 기관의 홍보예산으로 서비스개발 및 기관설치의 '행사홍보비'항목으로 이동 편성
	산 하 기 관 설 치	1,260	0	- 서비스개발 및 기관설치의 '시설비, 채용용역 등' 타목으로 이동편성
	행 사 홍 보 비	0	300	- 서비스원 홍보사업비 3억원 - 소속기관 신규설치 시 개소행사, 서비스원 행사비용 신규 편성
	연 구 개 발 비	100	350	- 교육훈련 연구개발비 1억원 - 보육사업과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1억원 - 민간지원사업 연구개발비 5천만원 - 종합재가서비스사업 연구개발비 1억원
	시 설 비 등	400	1,180	- 본부 1개소 및 신규 소속기관 7개소에 따른 건물인테리어비 증액
	자 산 취 득 비	276	910	- 본부 1개소 및 신규 소속기관 7개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증액
어 린 이 집 운 영	0	2,858	- 어린이집 국·시·구비(5개소 운영시) 보조금 예상수익	

(3) 검토의견

- 민간 군소 시설의 난립 및 일부시설의 열악함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여짐.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므로 운영의 내실 확보를 위해 종합재가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초 계획안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19년도에 개소된 종합재가센터와 '20년도에 설치 예정인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규모도 현재 제시한 안보다는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 계상한 예산액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위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출연금 예산(안) 중 소속기관 인건비(168억원) 항목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본부 확대 및 신규 소속기관 개소 등(21억) 항목 또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사무관리비 과목에서 돌봄정책홍보비(1억) 및 출연금 과목에서의 행사홍보비(3억)은 성격상 유사하다 보여지므로 예산의 중복 방지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서 126p.)

(1) 현황

- 위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19%인 62억 7천 6백만원을 증액해 총 386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가운데 43억이 저소득 자산형성지원 사업(통장사업)임.

〈복지재단 주요 예산 증액 내역(출연금)〉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증액	증액사유
1	서울형 자산형성 사업 운영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8,670,848	11,248,829	2,577,982	· 지원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증액 : 2,578백만원 - '20년 기존 참가자 매칭지원기간 증가('19년 4개월 → '20년 12개월)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이름통장	2,730,476	4,492,495	1,762,018	· 지원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증액 : 1,762백만원 - 기존 참가자 1,930명 매칭 지원 기간 증가 반영('19년 4개월 → '20년 12개월)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2	기관 운영비	인건비	10,066,414	11,293,833	1,227,419	· 인건비 인상률 반영 ('20년 인건비 인상률 4.2% 반영) : 1,227백만원
		운영경비	3,401,430	3,881,552	480,122	· '19년 대비 정현원(6명)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복리후생비 등) : 480백만원
		성과급	1,246,689	1,373,408	126,719	· 성과급(190%) 편성: 127백만원 * '19년 편성기준 동일 적용
3	예비비	259,644	360,644	101,000	· 기능보강사업 및 돌봄SOS센터 활성화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6명 신규채용인건비 반영 : 101백만원 *인력증원비용예비비 편성	

(2)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가) 서울형 인증제도 사업

○ 사업현황

- 위 사업은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좋은돌봄인증 품질향상지원, 좋은돌봄인증 전문위원양성,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좋은돌봄 인증사업은 인증심사, 품질향상지원, 전문위원양성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전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 공공관리체계의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은 전년도인 201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의 경우, 전년도(2018년) 기준 6개 법인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사업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집행률 및 미비 사유〉

연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집행률 80%이하 사유
2017	38,950	21,607	55.5%	- 인증심사법인 수 감소(53.3%) 지출감소
2018	41,620	13,195	31.7%	- 10~11월 중 인증 심사 관련사업 추진 및 현장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예정 - 일회성 행사 사업(컨퍼런스 개최 등) 지양에 따른 예산 절감분(전체예산 대비 31%) 발생
2019. 9월 30일 기준	36,965	12,189	33.0%	- '17년 시범사업 이후 서울시 법인인증 사업계획(40개소) 통보 및 서울시 협조 요청에 따라 30개소 법인인증 심사 예산 수립하였음 - 실제 신청법인 수가 6개소로 심사소요 예산집행이 대폭 축소되어 집행 됨

- 평가가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일방향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인증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가과정에 중점을 두며, 기관의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게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들에게 인증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법적 강제성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계전문가, 자치구,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을 받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사업 관련 점검 필요

○ 사업현황

- 복지재단의 ‘동단위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사업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7개가 포함되며, ‘19년 9월 기준 각각의 사업 집행률은 다음과 같음.
-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 집행률이 높지 않으며, ‘19년 9월 기준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3개나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예산 집행현황(‘19.9월 기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A,천원)	집행액 (B, 천원)	집행률 (B/A, %)
		세부사업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528,912	294,116	55.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	103,900	25,931	25.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직무 성과평가연구	35,000	30,560	87.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협력	41,520	14,286	34.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08,182	75,257	69.6%
		민관통합사례관리 지원	28,730	1,030	3.6%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	151,610	89,090	5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59,970	57,962	96.7%

- 집행률 80%이하의 사유로 10월, 11월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사유로 들고있으나,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자문회의 등의 사업을 연말에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예산집행현황 80%이하 사유(19.9월 기준)〉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	집행률 80%이하 사유	비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 지원	103,900	25,931	25.0%	- 강사양성과정, 차세대리더 워크숍 진행 등 대부분 사업이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협력	41,520	14,286	34.4%	- 현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모니터링 진행 중으로 4분기 예산 집행 예정(모니터링 결과분석, 결과공유회 등 추진 예정) - 사례관리 체계마련 자문회의 10~12월 진행예정(회의운영비 사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08,182	75,257	69.6%	- 위기사례대응매뉴얼 원고작업 일정지연, 10월 말 원고작업 완료, 11월 제작 예정	
민관통합 사례관리 지원	28,730	1,030	3.6%	- 실무자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10. 24예정), 교육((10월21,28일 / 11월 14,18일)은 10월, 11월로 계획되어 관련 준비 진행 중임	
찾동과 민간 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	151,610	89,090	58.8%	- 연말 성과공유회 추진예정 - 실무가이드제작은 10~11월 실시 예정	

- 성과공유회, 컨퍼런스와 같은 일회성 성과공유 행사의 경우 성과공유를 위한 사업의 대부분이 연속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매년 성과공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이 듦. 성과공유 행사개최의 적절성, 규모, 비용 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반복지적되었듯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현재 추진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동복지대학 사업)’의 경우 동에서 주민들이 시행한 사업으로 ‘반찬나눔’, ‘독거노인 결연 서비스’ 등을 결과로 들고 있으나, 기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들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다) 복지재단 예산 집행관련

-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출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6건은 약 3억 6천만원을 연말까지 지출해야함.
- 예산 집행 관련 문제점
 - 아래 표에서 계상되는 불용액은 추정불용액이므로 현재 예상한 추정불용액보다 더 높게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과다 계상한 결과이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는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방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편성단계에서부터 전년도 집행률 및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재단의 노력이 필요함.

〈2019년 9월말 집행률 저조 사업 예산집행 및 연말결산 추정 불용현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추정액	추정불용율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320,402	140,652	58,750	18.3%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41,620	13,195	21,925	52.7%
공약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성과분석	26,780	10,828	3,552	13.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 지원	103,900	25,931	17,404	16.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협력	41,520	14,286	7,044	17.0%
민관통합 사례관리 지원	28,730	1,030	5,285	18.4%

(3) 검토의견

- 복지재단의 '20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7천 6백만원 증가한 386억 3천 5백만원으로 19% 증가하였음.

- 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서울시복지정책 연구개발, 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복지서비스 확대,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공공성 강화,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 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기관 평가·인증업무는 법인 자체의 인증심사 신청 건수도 저조하며, 따라서 사업 전체의 집행률도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재단의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재점검이 필요함.
- 더욱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같은 서울시 선도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서울시의 복지정책관련 정책을 선도하기보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재단 홍보의 경우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재단 내부의 경영예산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시행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금번에 증액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서도 재단 사업의 통·폐합 등을 실시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년 추가경정 예산 시에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역돌봄복지과

- 지역돌봄복지과는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2,453억 4천 3백만원에서 6.6% 증가한 2,615억 8천8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지역돌봄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315,408	422,023	106,615	33.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0,210,000	12,307,000	2,097,000	20.5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1,009,000	1,267,800	258,800	25.6
고독사 예방사업	675,000	875,000	200,000	29.6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65,545	13,035,978	9,970,433	325.2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4,705,936	3,362,803	△1,343,133	△28.5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320,000) 320,000	(×150,000) 150,000	(×△170,000) △170,000	△53.1

1) 주요 증액 사업

가)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 (예산서 228p.)

(1) 현황

- 위 사업은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돌봄부담이 제로(Zero)인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전년보다 325% 증액된 130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증액의 주된 내용은 '19년도 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20년도에는 8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해 총 13개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인건비, 서비스지원 사업비의 증액임.

(2) 돌봄SOS센터 사업의 문제점

- 돌봄 SOS센터 사업이 주민의 돌봄 욕구에 공공이 적극 대응하며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도입되긴 하였으나, 아직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의 차이점이 미비하며, '19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이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채용된 복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시비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돌봄 SOS센터 사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채용되는 인건비에 대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업무분장에 따르면, 찾동 공무원은 내방주민,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SOS센터로 연계하고, 돌봄SOS의 돌봄매니저는 돌봄 업무전담 및 자원연계를 주요 업무로 들고 있으나, 기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며, 옥상옥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돌봄매니저 역할 및 기능〉

정보제공	돌봄매니저(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u>돌봄 서비스 종류 및 제공기관 정보 제공</u>
케어플랜수립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u>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 방문하여 복지 + 보건 + 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수립</u>
서비스연계	돌봄 수요자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전담 기관)에 <u>서비스 신청(대행) 및 연계</u>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u>사후 관리</u>

- 특히, 동행이동 지원, 주거관리, 식생활 지원, 가사지원으로 구성된 일상 편의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 민간자원,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서비스 부담료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등은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검토의견

- 돌봄SOS센터 사업은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의 차이가 미비하며, 사업을 위해 투입된 돌봄매니저와 기존의 찾동플래너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돌봄SOS센터를 확충하려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촘촘히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화된 안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속한 찾동간호사, 복지플래너 등 방문인력의 수행업무와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방문간호 수행업무와의 업무중복에 대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업 (예산서 194p.)

(1) 현황

- 위 사업은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액사유로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성과연구 학술용역비,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설치, 찾동 방문인력 소액치료지원비, 방문인력 예방접종비의 신규편성 등이 새로 편성된 데 있음.

(2) 현안 및 문제점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빈곤 및 폭력·학대·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추진배경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내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정의와 개입정도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시·구 서울지방 경찰청과 협업해, 구당 1개소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원(보람일자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음.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팀 구성원 수행역할]

모니터링 요원		약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로 등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신고 자료 공유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 상담원의 경우 50플러스 재단에서 실시하는 보람일자리로 수행되고 있으나, 팀 구성원 수행역할을 봤을때는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사업을 실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른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는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찾동 복지플래너 안전 및 활동용품과 방문인력 소액치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에 대한 편성기준이 애매함.
 -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19년도 11월에는 호신용 스프레이(3,300개)를 배부하는 등 충분한 사전 예산 집행이 있었음. 그러나 인력 안전에 대한 기존 배부 물품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움.
 - 이미 2인 1조 방문의 강조, 방문동행인력 지원, 방문안전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는데도 계속해서 방문 시 안전사고가 일어

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사고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통계화한 후, 체계적인 대책과 안전물품 및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예산편성에 대한 주의 필요

- 예방접종 내용에는 독감(인플루엔자)와 A형 간염의 항체검사와 접종이 포함되어 있음. A형 간염의 경우 주로 항문-경구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이며, 불량한 개인 위생, 부적절한 음식처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방문 인력이 방문 시 오염된 음식의 섭취 등을 조심한다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실질적인 방문시간과 접촉 거리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사업 시행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본 예산 편성이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연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 복지플래너의 경우 가정방문이 줄고, 내방상담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도 가정방문, 내방상담 모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의 찾동사업에서 방문복지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조해왔다면, 이제는 발굴된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기타 사업

가)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 (예산서 199p.)

(1) 현황

- 위 사업은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은 자원발굴 연계 등 희망온돌사업 지원을 위한 시민기획위원회 운영, 나눔이웃 사업, 나눔가게 사업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년과 대비해 사업비용의 증액은 없으나, 복지공동체 구축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2) 사업의 문제점

- 현재 복지정책실 내에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지역주민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성과 실적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직능단체 회원, 통·반장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민들은 중복참여로 피로를 호소하는 실정임.
- 현재의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명확한 사업 성과측정기준이 없는 상태임
 -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측정 지표의 하나로 '신규주민 발굴 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신규주민'의 정의가 불명확함

- 결국 수많은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결과는 사업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3) 검토의견

- 주민조직화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연구가 부족하고, 더욱이 관의 주도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한 사례가 없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중복참여로 인한 피로도 누적 및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이미 시의회를 통해 충분히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임.
- 적절한 성과측정기준과 주민들의 중복참여를 막고, 신규 주민을 영입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역량강화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은 참여빈도와 내용에 한계가 보임.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등 지원인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평가됨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현황〉

자치구			채용 직위 (인원)	계약형태	
중	로	구	-	-	
중		구	-	-	
영	산	구	-	-	
성	동	구	직원 (2)	계약직(1년)	
광	진	구	사무국장	기간제(10개월) 재계약 가능	
			간사	기간제(11개월) 재계약 가능	
			간사	기간제(6개월) 1개월 연장가능	
동	대	문	구	간사	기간제(5개월) 재계약 가능
중	랑		구	간사	기간제(1년)
성	북		구	간사	기간제(3개월) 재계약 가능
강	북		구	간사(2) 직원(1)	기간제(1년)
도	보		구	직원(1)	무기계약
노	원		구	-	-
은	평		구	간사(1) 직원(1)	기간제(1년) 기간제(1년)
				사무국장 (1)	-기간제(1년) -공무직
서	대	문	구	직원(1)	기간제(약6개월)
				간사	기간제(1년)
마	포		구	간사	기간제(1년)
양	천		구	간사	계약직(1년)
강	서		구	간사	기간제(1년)
구	로		구	전담직원	기간제 (2019.12.31.까지)
금	천		구	사무국장 (1)	기간제(1년)
영	등	포	구	직원(1)	계약직(1년)
동	작		구	사무국장 (1)	계약직(9월)
관	악		구	간사 (1)	기간제(8월)
서	초		구	간사 (1)	계약직(1년)
강	남		구	간사	기간제(1년)
송	파		구	간사	기간제(1년)
강	동		구	전담직원 (1)	기간제(6개월)

다.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등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2조 2,634억 6천 8백만원에서 14.2% 증액된 2조 5,854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어르신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2,202,623) 5,803,695	(×2,257,233) 6,625,073	(×54,610) 821,378	14.2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6,250,733	7,267,175	1,016,442	16.3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7,185,000) 14,710,000	(×0) 20,311,000	(×Δ7,185,000) 5,601,000	38.1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5,854,826	6,482,897	628,071	10.7
기초연금 지급	(×1,674,056,765) 1,954,972,988	(×1,935,150,634) 2,237,353,019	(×261,039,869) 282,380,031	14.4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561,828) 1,185,276	(×608,141) 1,406,502	(×46,313) 221,226	18.7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3,338,100	4,269,184	931,084	27.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982,413) 23,924,120	(×26,620,800) 39,958,600	(×10,638,387) 16,034,480	67.0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1,034,000) 2,068,000	(×3,271,000) 6,542,000	(×2,237,000) 4,474,000	216.3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700,000	4,678,000	3,978,000	568.3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033,328) 7,105,591	(×606,212) 2,582,424	(×Δ4,427,116) Δ4,523,167	Δ63.7
□ 신규사업				
혹서, 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시민참여)	0	250,000	250,000	100.0

1) 주요 증감사업

가)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예산서 272p.)

(1) 현황

- 위 사업은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준 제고 및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쉼터 운영 및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2020년 26억 8천 7백만원 증액된 64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2020년에 편성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사업안에는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만64세 이하)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예산 또한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음.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계	권역별 지원센터							쉼터	
		소계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무원	소계	행정사무원
계	34	22	4	4	8	1	1	2	12	12
서북권 지원센터	16	10	1	1	2	1	1	4	6	6
서남권 지원센터	6	4	1	1	2	-	-	-	2	2
동북권 지원센터	6	4	1	1	2	-	-	-	2	2
동남권 지원센터	6	4	1	1	2	-	-	-	2	2

※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추진실적('19년 9월 기준)

(단위 : 누계, 회/명)

구 분	종합지원센터	서남 지원센터	동북 지원센터	동남 지원센터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474회/ 6212명	541회 / 5,584명	318회/ 3,633명	227회/2917명
돌봄종사자 권익옹호	204회/ 11,053명	1,556회 / 1,857명	426회/ 1,805명	584회/910명
좋은돌봄 인식개선	90회/ 1981명	36회 / 685명	25회/ 401명	34회/1,587명
홍보 등 센터기능강화	463회/ 97,005명	713회 / 44,904명	347회/91,012명	1,186회/23,987명
정책기획(종합센터만 해당)	38회/ 186회		-	

(2)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가)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와 쉼터에 대한 검토

○ 사업의 모호한 목표 및 성과 측정 기준 개선 필요

-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장기요양요원,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권역별 모임,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 계획 설명회 등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를 연인원으로 측정하고 있음.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실적의 대부분을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행사 참여 인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성과 측정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전문가 네트워크, 유관 기관 업무협력 사업, 동북권 지역사회 활동 등을 내용으로 사업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영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설대관 등을 추진실적으로 포함하고 목표인원(305명) 대비 실적인원을 연인원(1,541명)으로 측정하여

실적을 확대 측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 간 업무 중복

- 쉼터의 주요 업무인 돌봄 종사자의 역량강화, 좋은 돌봄 인식개선 사업, 직무향상 교육, 노동 상담, 취업상담, 지원센터 홍보 등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의 업무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와 쉼터의 사업내용〉

구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쉼터
세부내용	직무향상교육권익옹호사업, 센터홍보사업, 협력체계구축 센터역량강화사업, 인식개선사업, 건강증진사업, 리더양성사업,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홍보사업, 협력체계구축

- 집행부는 쉼터 설치 이유에 대해 “시전역에서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권역 내에서도 지원센터가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고, 지원센터내 공간부족을 해소하고자 접근성이 용이한 쉼터 추가 조성”으로 밝히고 있으나 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예산 집행율 저조 사업의 집행율 제고 필요

- 9월말 기준 리더 양성 사업, 인식개선사업, 센터 역량 강화 사업 등의 경우 집행율 50%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인식개선사업의 경우 집행율이 39.3%로써 향후 계획으로 교육, 지역 특강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연말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예산 전액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돌봄종사자 교육집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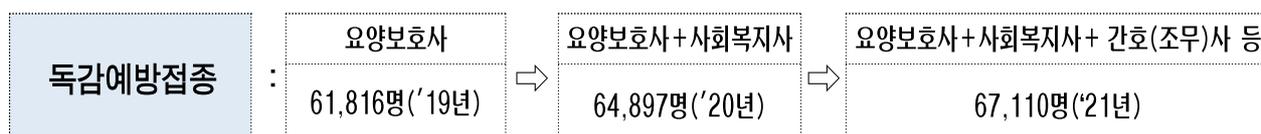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율(%)
리더양성사업	리더양성 교육, 리더 간담회	39
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 캠페인, 좋은돌봄실천단 권역별 모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설명회	39.3
센터역량강화사업	외부 전문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직원교육, 직원회의 등	49.3

○ 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돌봄종사자의 접근성과 지역의 이유로 쉼터를 설치하였으나, 돌봄종사자지원센터와 쉼터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 돌봄종사자센터와 쉼터 사이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존재함.
- 돌봄종사자지원 센터와 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 점검을 통해 돌봄종사자지원쉼터와 센터역할의 재구조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성과 등이 과대 측정되거나 보고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이나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어르신돌봄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예산에 대한 검토

- 집행부는 어르신돌봄종사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구조에 의한 처우 열악 및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예산반영의 근거를 밝히고 있음.



-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인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고령의 중장년 여성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이용자와의 직접 접촉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되나,
-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안은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타지역 시립시설 포함)에 근무하는 만64세 이하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61,816명 대상, ‘4가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자치구가 장기요양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정산함.
-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 공중보건상의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 64세 이하의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건강권 확보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여겨지나,
- 연차별로 다른 장기요양요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향후 장기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산확보와 함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서울시복지재단의 2019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 60세로 고령이고 이들은 업무 중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약 18%, 아파도 일한 경험의 경우도 25%로 조사되었음.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노동 경험은 전반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신체폭력과 성희롱,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은 자주 벌어지지 않았고, 부당한 심부름요구는 방문요양에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은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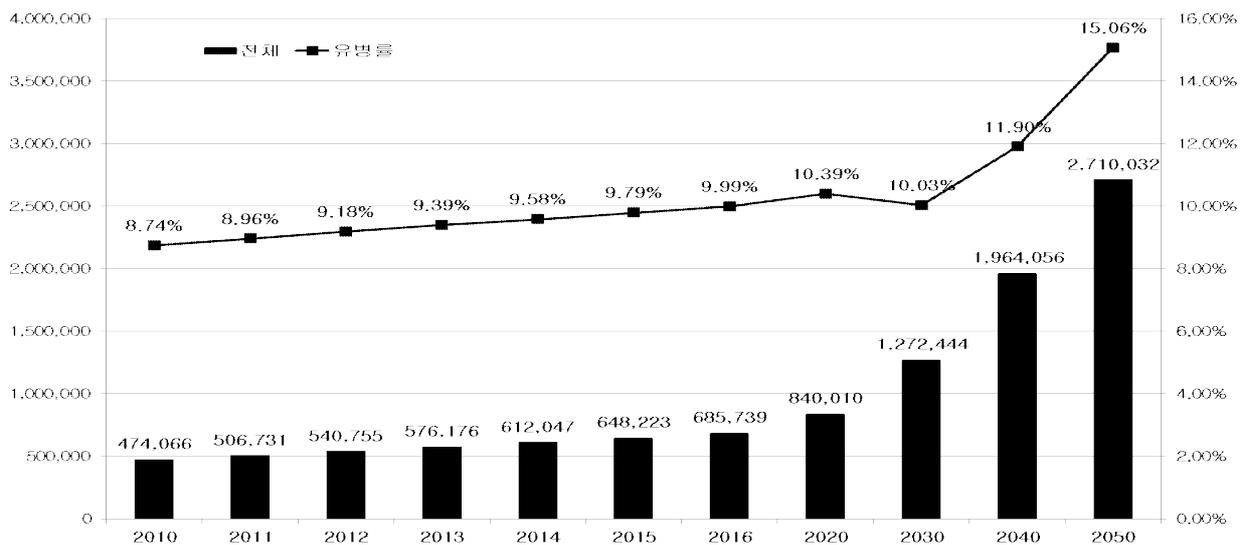
- 어르신돌봄종사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모호한 목표 및 성과 측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어르신 쉼터의 설치 이유가 돌봄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과 지원센터 내의 공간부족 해소 등의 사유이나 현재 쉼터와 센터의 업무의 중복 운영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가 없는 20년 예산(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4개소, 19억 9천 5백만원) 및 쉼터운영(8개소, 9억 3천 7백만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과목과 가타자본이전 과목에 있는 광역센터 공간확장 리모델링비(7천만원) 및 광역센터 공간확장 임대보증금(6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센터와 쉼터의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한 검토없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에 있는 어르신돌봄종사자 독감예방접종(20억 7천만원)에 대하여는 다른 장기요양요원 및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지속적인 예산 증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효율성 확보를 해야할 것임. 또한, 앞으로 서울시 재정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나)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서 263p.)

(1) 현황

- 위 사업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어르신 건강과 안전 지원,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2019년 158억 7천 1백만원의 예산에서 2020년에는 1억7천5백만원 감액된 156억 9천6백만원 예산을 편성함.
-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복지욕구에의 대응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 장기요양의 가족부양 한계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강화하고 노인부양비의 급증에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 필요한 실정임.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 추이]



- 65세 이상 한국 노인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통계를 살펴보면, '17년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3.8이지만 '25년에는 19.1, '30년도에는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23.2에 이르는 등 노년부양비가 현재 18.4의 약 2배인 3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요양 수요 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생산가능인구 당 노년 부양비〉

(단위 : 명)

구분	'10년	12년	'14년	'17년	'20년(추계)	'25년(추계)	'30년(추계)
전체인구	10,575,447	10,442,426	10,369,593	9,857,426	9,761,875	9,689,738	9,564,220
노인인구 (인구대비)	1,007,572 (9.5)	1,110,995 (10.7)	1,221,616 (11.8)	1,359,901 (13.8)	1,468,937 (15.1)	1,852,938 (19.1)	2,217,404 (23.2)
노년부양비	12.4	13.9	15.5	18.4	20.5	24.6	35.4

※ 출처: 서울통계,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노인수

(2) 요양수요에 대한 데이케어센터의 필요성 및 현안과제

- 서울시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총 개소 수는 418개로 정원 충족률은 공공 운영시설(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95%, 민간운영시설은 개인시설은 72%, 협동조합은 15%로 민간운영시설의 정원 충족율이 공공운영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 '19년 8월말 기준 데이케어센터 총 대기인원 1,639명(정원대비 83.1%)로 민간운영시설에 비해 공공운영시설(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입소대기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운영주체별(공공/민간) 정원 총족률]



- 시설별 일부 중복 대기자를 감안하더라도 데이케어센터 대기인원 1,195명 기준으로 시설의 추가 확충(정원 20명 기준시 60개소)이 필요(마포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대기자가 특히 많음)하며, 우수한 공공운영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대기자의 대부분이 공공운영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공공운영시설 확충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수준 제고가 필요함.
- 재가급여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확대를 위하여 데이케어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며, 공공데이케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 데이케어센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민간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서울형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서울시는 치매전담시설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년 말 현재까지 수요신청이 저조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치매전담시설에 대한 기존 데이케어센터의 증개축 문제 및 법적 제한 등의 문제와 함께 증개축에 대한 비용 발생 문제도 존재함.

-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기존 입소자를 퇴소 또는 전실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맡기고 있는 등 노인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짐.

※ 지원기준(보건복지부 지침)

- 증개축개보수 시설비, 급여비용 인상, 한시적 지원금
 - ▶ 증개축개보수 시설비
 - (증개축) m²당 1,325천원(국비 80%, 시비 20%) ※ 최대 360m², 477백만원 지원
 - (개보수) m²당 662천원(국비 80%, 시비 20%) ※ 최대 180m², 119백만원 지원
 - ▶ 급여비용 인상 : 일반 시설 대비 10.9~25.8% 지원(36개월)
 - ▶ 한시적 지원금 : 입소자 1인당 월 5~10만원 지원(36개월)

- 치매전문 교육이수 필수로 인해 인력채용 및 배치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일반요양보호사 채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이수자 구인이 어려워 교육이수시간 동안 대체인력 필요함.
- 치매전담실(12인 기준)에 요양보호사가 3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과 나이트 근무를 감안할 때 법정인력(6인)외 1인 추가 배치 필요
- 또한, 동일 기관에서 법정인력의 수가 및 배치기준이 상이하여 종사자 간 갈등 예상되며, 현재 장기요양3~5등급 수가 기준금액임.(일반 : 55,780원, 치매전담실 : 68,790원)
- 치매전담실은 일반실보다 수가가 높아 본인부담금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함으로써 입소 기피할 수 있으며. 치매전담실의 경우 이용대상자가 1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90일까지만 이용토록 되어 있어, 일반요양실이나

타 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데이케어센터 서비스질에 대하여서도 서울 시내 데이케어센터의 모니터링을 현재 복지재단의 소수의 인원만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인증하고 있는바, 치매전담형 데이케어시설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서비스질을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일반데이케어시설뿐 만 아니라 치매전담형 데이케어센터까지 모니터링 및 평가 인증을 복지재단에 맡긴다면 복지재단의 제한된 모니터링 인원과 평가 인증 인원으로 서울시에 있는 데이케어 시설들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및 평가 인증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관례적, 전례적으로 서류 등을 통한 평가인증 및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사료됨.

〈데이케어센터 현황('19.8월)〉

설치주체	개소 수	정원	현원	잔여인원	대기인원 (중복대기 포함)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계	418	11,652	9,683	2,015	1,639	83.1%
시 립	22	530	509	24	203	96.0%
구 립	110	2,483	2,421	117	979	97.5%
법 인	104	2,630	2,402	313	346	91.3%
개 인	173	5,746	4,143	1,504	96	72.1%
협동조합	9	263	208	57	15	79.1%

(3) 검토의견

- 행정의 추구해야 할 제1목적이 시민안전이고, 다음 목적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매전담형 데이케어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

금을 주어 전환하게 하는 것은 운영여건의 악화와 함께 시설에게는 재정적 부담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여겨짐.

- 또한 치매전담실 추가 필요 인력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비는 증가의 부담이 존재하며, 현재 한시적 지원금(3년)으로 보전하는 것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기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사업의 시행하기 전 인증기준의 지표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라.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는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중장년층의 은퇴 후 제2 인생 설계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2,929억 6천4백만원에서 7.0% 증액된 3,135억 5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인생이모작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582,026	3,354,543	772,517	29.9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7,439,875) 146,124,730	(×76,255,400) 165,225,033	(×8,815,525) 19,100,303	13.1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4,164,789	16,364,655	2,199,866	15.5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897,654) 1,244,138	(×1,116,884) 1,595,548	(×219,230) 351,410	28.2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	(×2,019,740) 2,670,940	(×2,613,000) 4,355,000	(×593,260) 1,684,060	63.1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50+센터 확충 및 운영	6,048,520	5,325,940	△722,580	△11.9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392,000	242,000	△150,000	△38.3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739,987	4,266,457	△1,473,530	△25.7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887,872	733,120	△154,752	△17.4
50+캠퍼스 확충	17,414,442	13,788,442	△3,626,000	△20.8

1) 주요 증감사업

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서 340p.)

(1) 현황

- 위 사업은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마련 및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보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년대비 191억만원(13.1%)이 증액된 1,652억 2천 5백만원(국비 762억 5천 5백만원, 시비 889억, 6천 9백만원)이 예산 편성됨.
- 본 사업은 75,544개(공익활동 59,959개, 사회서비스형 2,822개, 시장형 9,991개, 인력파견형 3,772개)의 규모로 국비, 시·구비 매칭사업(국비 30%, 시·구비 각 35%)임.
-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로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참여 가능하며 현재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보건복지부 사전 안내에 따른 일자리 사업량 확대 반영되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이 22.8% 증가(2018년 66,649명 → 2019년 81,570명)됨

〈2019년 사업 유형별 세부내역〉

- 전체사업량 : 75,54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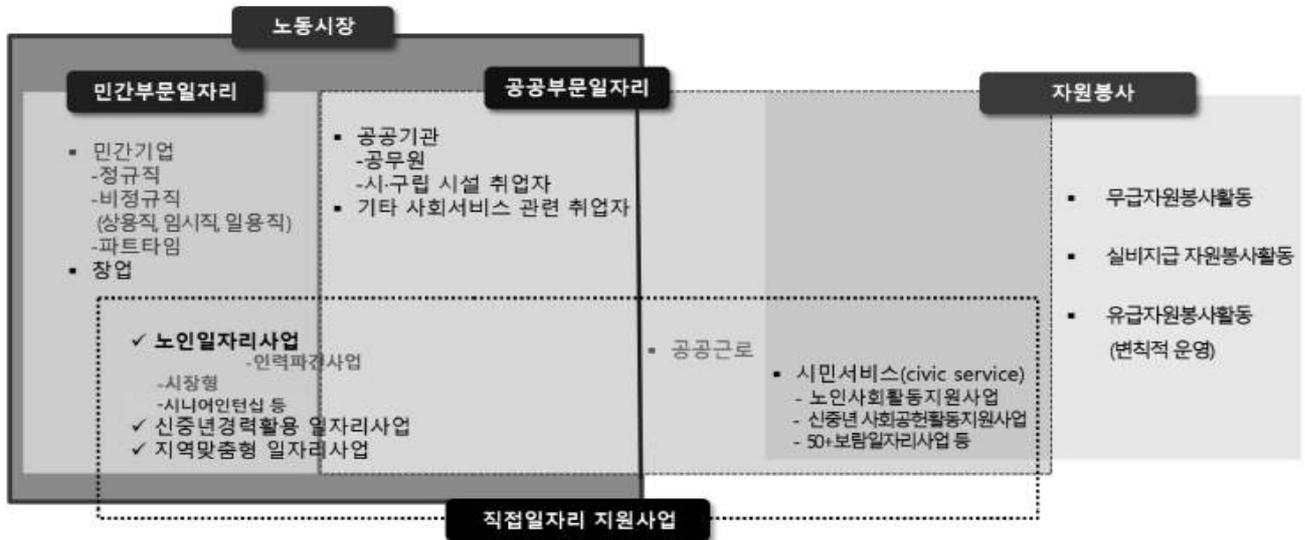
※ '18년 계획 67,943개 대비 증 7,601개(11.2%)

계 (단위 : 개)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담인 력
		노노케어		일반				
		연중	9개월	9개월	10개월	연중	연중	13개월
전체	75,544	7,533 (9.9%)	3,002 (4%)	48,424 (64.2%)	2,822 (3.7%)	9,991 (13.2%)	3,772 (5%)	520
자치구	74,229	7,233	2,852	48,019	2,762	9,591	3,772	509
시직속	1,315	300	150	405	60	400	0	11

※ 단,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자치단체경상보조의 일부를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신규 수행기관의 사업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시 전역 확산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2)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민간 일자리와 연계 미흡 문제

- 자치구 일자리 실적 중에서 보면, 시니어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지만 시니어일자리 협력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고용자인재은행, 일자리플러스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사업 등 시니어 일자리의 비중이 자치구 전체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니어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내 시니어일자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다양한 전달체계(고용노동부, 복지부, 서울시, 구청)에 속해 있는 자치구 내 공공취업지원기관들의 시니어일자리 실적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이는 고용서비스에서 고령자인재은행,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등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거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포함되지만 보람일자리사업(대상:50-67세),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대상:만 50세 이상) 등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활동 등)과 같은 직접일자리사업, 교육 이수 후에 취업 연계가 명확하지 않는 직업훈련사업에서 목표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와 연계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목표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음.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2016~2018년도)〉

(단위 :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전체	50,113	56,177	60,421	59,031	67,943	66,617	
자치구	49,103	54,252	59,173	57,718	66,649	65,262	(국:시:구 30:35:35)
시직속	1,010	1,925	1,248	1,313	1,294	1,355	(국:시 30:70)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당초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46억 8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1,652억 2천 2백만원이었으므로 자치구에 내려가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은 변경이 없으나,
- 시직속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물량이 당초 3,900개에서 4,000개로 100개가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54억 2천 4백만원 증조정되어 차액 8억 1천 6백만원의 예산 차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중앙정부의 일자리 개수 조정으로 인한 증·감액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사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음.
- 국·시비 매칭 사업의 특성상 매칭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예산안 편성 전에 복지부 가내시액 확정을 통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예산 편성의지가 요구됨.

〈 2020년 현 예산안 가내시 차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자 치 구	시 직 속
2020년 예산(안)	(x77,638,000) 169,828,703	(x76,255,400) 165,220,033	(x1,382,600) 4,608,670
2020년 가내시	(x77,883,000) 170,644,667	(x76,255,400) 165,220,033	(x1,627,600) 5,424,634

* 2019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후 복지부 가내시 통보로 예산안에 미반영(의회 심사과정에 조정필요)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 보수 수준과 기간 등 근로여건의 개선없이 일자리 수 증가 위주로 확대된 경향이 보이며,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노인의 직접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 투입과 참여노인 교육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의 수당보전적 성격이 강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같은 수당 보전성격의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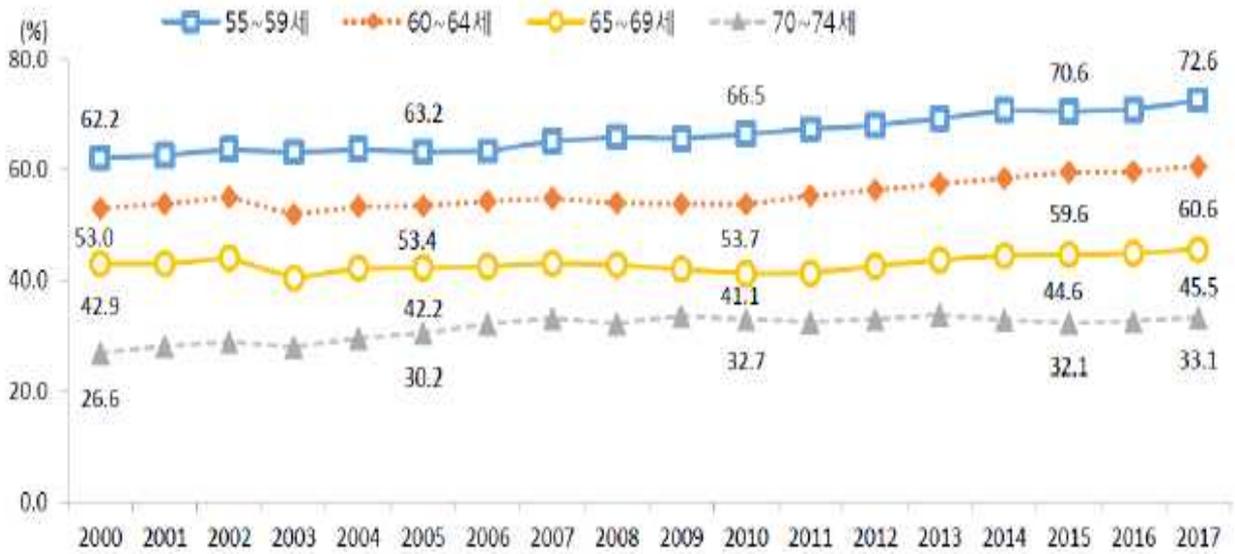
〈연도별 어르신일자리 집행실적(시직속사업)〉

(단위 : 개, 천원, %)

연 도	배정일자리	누적참여자수	예 산	집행실적	집행률	비고
2016	1,925	1,864	2,995,851	2,853,804	95.0	12개사업 8개 기관
2017	1,313	1,548	3,237,000	3,156,935	97.5	19개 사업 15개 기관
2018	1,355	1,337	3,620,000	3,328,873	92.0	14개 사업 10개 기관

[고용률(55~74세) 추이]

< 고용률(55~74세)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TAT

- 위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어르신 고용률 추이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실업률이 높은 실정인데 그 요인 중에 노인 고용률이 낮은 것도 고려해 볼 사안임.
- 그간 중앙정부의 기조인 노인일자리 물량의 우선적 확대에 따라 질적 측면 개선이 미흡하며 단순 공공근로 위주의 사업 확산과 다른 사업과의 중복 문제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의 만족도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 일자리 개발 및 사업 발굴이 시급해 보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54명 당 1명의 인력을 채용·운영할 수 있게 전담 인력²⁾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치구 내

2) 수행기관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임

수행기관의 양적 충족을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 시 및 자치구별로 적정 양의 수행기관(인프라)이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로인해 수행기관(인프라)의 수 및 규모 등 그 기반이 건실한지 여부를 진단하여 양적 관리 및 실태파악을 통한 중·장기 관점의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토의견

-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인구수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나 다만 양질의 적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신규 사업발굴이 필요함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활성화 및 사업관리 강화, 전담 인력 처우 개선, 수행기관 평가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부와 국비 매칭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으나 금번처럼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확대는 어르신일자리의 취지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 일자리 매칭 사업의 명목으로 과다 추계를 할 경우 필요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 등의 시민에게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필요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축소 되어 운영되는 등의 시민에게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복지부와 사업량 및 예산추계와 관련한 사전 매칭비율 확정 등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어짐.

나)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예산서 348p.)

(1) 현황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상담 및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등을 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5천 9백만원 증액된 181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50+재단은 '20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북부캠퍼스 개관과 관련하여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 등(65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371백만원) 및 정책사업 「중장년층 인생재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 예산(92억 3천 6백만원)사업비가 반영되었음.

(2) 50+재단·캠퍼스 운영 및 사업 전반적 검토

(가) 재단본부 이전에 관한 검토

○ 절차상의 문제

- 재단은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계획 검토를 '19. 5월경부터 검토를 하고, 제 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재단의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부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안을 말하였으나,
- 상임위에서는 이전의 필요성과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지 않음.

- 그러나 재단본부는 사무실 이전계획 검토보고를 7월22일에 하고, 당일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함.
- 이전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은 날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결 또한 당일에 처리하는 등의 졸속한 업무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로 구성 편성됨³⁾.
- 예비비의 사용은 엄격히 그 사용용도와 절차를 엄격히 해야하므로 예비비의 사용 결정 시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므로 이사회 의 단독 안건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비비는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하거나 예산의 편성에 반영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됨.
- 재단이 제출한 2019년 제6회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요청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안건 제91호-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음(〈표〉 2019년 제6회 이사회 의결안건).
-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도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바,

3) 2019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p. 34

- 재단의 예비비 사용을 통한 재단본부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원래 목적에 맞는 사안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으며, 예산의 항목 간 변경의 건이라면 이사회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되었음이 마땅함.
- 또한, 이사회의 예비비 변경 사용을 얻은 이후 재단 본부 이전에 대한 이사회 개최를 통해 논의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019년 제6회 이사회 의결안건〉

<input type="checkbox"/> 이사회 의결 결과		
○ (안건 제85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가 결
○ (안건 제86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가 결
○ (안건 제87호)	인사규정 개정(안) ※ 제29조 제9호 : 전체 삭제	수정가결
○ (안건 제88호)	복무규정 개정(안) ※ 제31조 제3호 수정 : 재단창립기념일(휴일은 4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지정) ※ 제37조 제1항 수정 : '범위에서' 삭제	수정가결
○ (안건 제89호)	안전기본계획(안)	가 결
○ (안건 제90호)	2019년 사업계획 변경(안)	가 결
○ (안건 제91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결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 사업(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재단은 계속하여 안일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해 온 행태에 대하여 20년 예산 시에 엄격한 심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재단본부 사무실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 50플러스재단은 사무실 공간 부족 사유와 '19.6.17자로 채용된 결원 인력 등의 근무 공간 필요성을 사유로 이전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전 대상지(포스트타워)로 재단본부 팀 중 1개팀(캠퍼스 기획팀)은 현재의 사무공간에 남아 있는 상태로의 이전은 재단에서 주장하는 근무공간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
- 재단은 이전 후 현재의 재단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3층의 공간을 이전 후 공유사무실 및 자치공간, 소회의실로 활용계획(4.관련자료-층별활용계획안)을 밝히고 있으나, 이름만 다를 뿐 공유사무실, 교육실, 소회의실은 성격상 같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제9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총괄

(단위 : 천원)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가율(%)
22,074,037	20,654,715	1,419,322	6.87%

- 수입 및 지출 추경(안) 주요내역

[수입] ① 사업외 수입 : 480백만원 증액(기부금 3건)

→ 3건(한국토지주택공사, LG유플러스,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사업외 수입으로 증액

② 서울시보람일자리 사업 보조금 변경 협약(19.6.24)으로 291백만원 감액

→ 2개 사업 감소 및 활동인원 축소 등

③ 도심권50플러스센터 수탁사업비 수입예산 계상 증액(1,230백만원)

[지출] ① 인건비 : 375백만원 증액(결원인력 채용 14명)

② 경 비 : 343백만원 증액

→ 사회공헌활동 봉사단 발대식 행사홍보비, 재단본부 이전 임대료 및 관리비, 중부캠퍼스 공간 수선비, 사무실 집기 반영 등

③ 사업비 : 384백만원 증액

→ 기부금 사업비에 반영, 정보시스템 구축비 추가, 커뮤니티프로젝트 지원사업 확대, 50+사업개발자문단 운영비 반영 등

④ 예비비 : 247백만원 감액

→ 재단 본부 이전 관련 임대료·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⑤ 봉급예비비 : 438백만원 감액

→ 결원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14명)

(나) 일자리모델지원 사업 전반 검토

- 50+캠퍼스는 새로운 인생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일과 활동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일모델을 제시하고 참여 지원하고 있음
- 서울50+인턴십, 50+일창업플랫폼, 혼합형일모델, 보람일자리사업, 50+사회공헌단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3년 동안 48개의 일모델을 발굴하여 운영

〈일자리 모델 세부현황〉

구분	일자리 모델 세부현황
2017 (14)	쪽방상담소지원단,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청소년시설50+지원단, 50+기자단, 50+NPO펠로우 농부인턴십, 50+한국어튜터되기, 50+사진가 인턴십 마을경제 기반 통합택배 인턴십, 사회적경제핵심인재, 시니어강사, 50+멘토
2018 (16)	50+커뮤니티지원단, 50+SE펠로우십, 50+마을기록가, IT지원단, 50+사진단, 어린이집50+지원단, 학교안전교육단, 50+자활기업펠로우십, 도시농부텃밭지원단, 봉제업체 현장실무 자문단, 50+외국인무역인자문단, 자유학기제 진로캠프매니저, 청소년 진로특강강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회적기업전문인력, 우리동네놀이돌봄히어로
2019 (18)	찾아가는우리동네자영업반장 , 서울50+뉴딜인턴십, 공유주방창업모델, 틈새매장창업모델, 공동주거창업모델, 도시재생창업가, 장애아동학습지원단, 사회적기업전문인력, 시니어비즈니스전문인력, 50+케어기버, 50+창업서포터즈, 우리동네50+프로,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굿잡5060,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소셜상품마케터, 50+자립지원코디네이터, 50+교육복지활동가, 자립자활교육강사, 중소기업인턴십, 50+다문화학습지원단, 50+방과후아동돌봄지원단, 도토리마을상담가, 시낭송생북플러스

- 재단의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모델의 세부현황<표1>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보이는 바, 이는 시행되는 사업의 가짓수만을 늘려 가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숫자적 통계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임.

- '19년도 일자리 모델에서 보면, ‘찾아가는우리동네자영업반장’, “서울50+뉴딜 인턴십”,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5060”, “우리동네50+프로’ 사업의 경우는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보임.
 - 이같은 유사·중복사업을 재단 일자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다각도로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 단순히 일자리모델의 이름만 거창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의 세비로 이루어지는 재단의 출연금을 낭비하는 요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모델을 통해 중장년세대가 얼마만큼의 취·창업을 하였는지 취·창업을 하였다면 재단이 개발한 일자리모델이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함.
 - 재단의 일모델지원에 의해 창업을 한 경우 창업유지률 조사와 취업의 경우 고용유지률 조사가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재단이 이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중장년 일자리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지원사업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50+재단사업과의 차별화 된 사업 전략이 필요해 보임.

(다) 예산관련

- 50플러스재단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중장년층인생재설계 및 사회참여지원 예산의 비중이 전년대비 51%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음.
- 세부내역을 보면, 50+세대이슈발굴 및 정책연구과 50+정책확산 및 네트워크 사업이 유사사업으로 보여지며, 50+일자리모델발굴 및 지원체계구축사업과 서울형양코르커리어사업 또한 유사성을 보임.
- 재단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50+세대에 일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일창업플랫폼 없던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가 단순히 행사2번을 개최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중장년층 인생 재설계 및 참여지원 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연도	
	2020	2019
50+세대생애전환교육및상담제공	1,514,379	1,830,450
50+세대이슈발굴및정책연구	41,068	664,809
50+정책확산및네트워크정책개발을위한포럼	5,800	90,000
정책홍보및문화확산을위한사업	1,105,249	1,040,612
생태계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	419,160	478,400
50+일자리모델발굴및지원체계구축	941,859	884,053
서울형양코르커리어사업	819,937	737,761
정보시스템구축및관리	1,222,647	955,491
50플러스캠퍼스기반구축및운영관리	2,606,379	2,073,843

- 재단의 사업 중 수강료수입의 경우 재단과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비중이 높는데 반하여 수강료 수입은 높지 않고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므로 교육 후 실제 연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재단 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퇴직적립금 계정은 존재하나,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의 퇴직적립금 계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고 있지 않는바,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분기마다 손비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원의 재직기간중에 미리 사전에 배분하여 일정액을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의 지출예산서 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장래에 있을 예산의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라) 개별사업 관련 문제점

- 온오프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인재DB를 구축 후 활용하고 있지 않는바, 구축된 DB의 활용방안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0+인턴십 사업은 파트타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바, 계속 파트타임으로만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며 이처럼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짐
- 사회공헌단, 보람일자리, 50+인턴십, 뉴딜인턴십 등 사업들은 스펙트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임. 각 세부사업 내용 간 중복이 많고 구분이 모호하며
- 사회공헌단의 실버케어-보람일자리 케어기버 유사, 사회공헌단의 기록지원단-보람일자리 마을기록가, 보람일자리 자활기업지원단('18 자활기업펠로우)-인턴십의 사회적경제인턴십 유사활동인데 반해 활동비 수준에서 차이가

단순히 외부사업과의 유사·중복뿐 아니라 재단내에서 자기복제형 사업이 아닌 지에 대한 재단과 관리부서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함.

- 보람일자리사업의 경우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중장년층에 일자리 지원을 통한 인생이모작을 실현하는 것이 사업의 특화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람일자리 선발과정이나 활동비 지급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 이는 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집행부(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재단에 이양한 듯한 업무의 태만사항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보람일자리 사업'의 참여 자격 요건 중 연령을 보면, 2016년 만 50세~64세, 2017년에는 3살을 더 늘린 만 50세~67세로 정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참여대상 연령을 67세까지 늘렸지만, 65세 이상 참여자 수는 전체 553명 중 38명으로 6.9%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연구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전무함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단이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음.

(3) 검토의견

- 중년의 일자리 모델의 구상할 때 창업모델의 경우 취·창업시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자리모델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한 보완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함.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일자리모델지원을 통한 자치구별 중장년 취·창업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지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50플러스재단은 엄밀히 서울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재단임으로 재단 관리자들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근태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관리자로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된 근태문제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50+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을 넘어 인생삼모작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수행을 해야하는 50+재단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나 사업예산을 과다 산출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0+재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한 문제가 조직 및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이므로 50+재단이 금번에 제출한 20년 예산(안) 중 재단 본부의 이전으로 편성한 예산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 보이지 않음.
- 재단의 외형의 확대는 지양해야하며 현재의 각 캠퍼스의 관리·감독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각 캠퍼스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리되 서울시 50+정책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단본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변경을 하는 등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재단의 본부 이전과 같은 출연금의 낭비는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50+재단, 50+캠퍼스 및 50+센터가 하나의 전달체계 하에서 같은 기조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의 자치구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50+센터에 대하여도 서울시 또는 50+재단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조례의 개정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결을 같이하여 정책수립

에 대한 연구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사료됨.

- 재단은 앞으로 서울시 50+시정정책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내·외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재단의 재정립이 필요함.
- 따라서 재단이 제출한 20년 예산(안)은 그동안의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등의 문제 및 서울시 50+ 중장년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연구 등 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제출한 예산(안) 중 인 권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라 인구고령화 문제는 그 시급한 긴박성을 요하므로 서울시 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에 대한 논의는 서울시 공조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업무 영역이라고 하겠으며, 전문적인 정책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50플러스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됨.

마.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2,369억 3천 4백만원에서 11.4% 증액된 2,638억 5천 6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9,821,231	22,082,830	2,261,599	1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60,000) 10,818,263	(×72,700) 11,959,312	(×12,700) 1,141,049	10.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1,689,086) 100,095,441	(×43,673,440) 111,287,421	(×1,984,354) 11,191,980	11.2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390,490	1,604,544	214,054	15.4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985,077	1,285,277	300,200	30.5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5,030) 15,030	(×59,376) 98,960	(×44,346) 83,930	55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7,602,681	42,060,828	4,458,147	11.9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398,822) 1,748,528	(×1,665,706) 2,082,133	(×266,884) 333,605	19.1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959,864) 2,079,705	(×1,148,207) 3,080,792	(×188,343) 1,001,087	48.1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1,832,897) 3,971,277	(×2,086,040) 4,820,774	(×253,143) 849,497	21.4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5,785,778) 12,535,852	(×6,854,000) 14,850,334	(×1,068,222) 2,314,482	18.5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239,008) 517,851	(×329,478) 713,869	(×90,470) 196,018	37.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50,529) 701,058	(×454,723) 909,446	(×104,194) 208,388	29.7

구 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4,622,078	12,688,934	△1,933,144	△13.2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96,548) 1,262,677	(×101,254) 1,060,642	(×4,706) △202,035	△16.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210,000) 420,000	(×134,000) 268,000	(×△76,000) △152,000	△36.2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395,000) 790,000	(×260,000) 520,000	(×△135,000) △270,000	△34.2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619,800	1,444,800	△175,000	△1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76,131) 2,152,263	(×461,133) 922,269	(×△614,998) △1,229,994	△57.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3,479) 1,034,333	(×0) 205,357	(×△23,479) △828,976	△80.1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2,131,000	0	△2,131,000	△100.0
□ 신규사업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0	975,000	975,000	100.0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50플러스 (시민참여)	0	500,000	500,000	10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0	(×3,050,,162) 6,100,324	(×3,050,,162) 6,100,324	100.0

1) 신규 사업

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예산서 512p.)

(1) 현황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최종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립된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서울시장 방침 제 181호, 2019.9.2.)을 통해 계획된 신규 사업임.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은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은 뇌병변장애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지원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 '17년 6월 뇌병변장애인 정책개발 TF 구성 운영 ➡ '18년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연구용역(서울시 복지재단) ➡ '19년 3월~6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운영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19년부터 5개년 간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해 26개 세부사업, 총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지원계획임.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주요내용('19년 ~ '23년)**

① 건강 지원 (6개, 122억원)	· 아동 등록 관리시스템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방문건강관리 확대, 성장기 장애인 보조기 지원 강화,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확대, 간병인 지원 확대
② 돌봄 지원 (5개, 47억원)	·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방 설치, 동료 상담가 양성, 진로실험센터 설치,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 인프라 확충 (9개, 247억원)	·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낮활동 지원 확대, 비전센터 설치, 거점 복지관 지정 운영 확대,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주거편의 지원 확대, 주거모형 개발·운영
④ 권익 증진 (6개, 188억원)	· 뇌병변장애인 강사 양성, 관광지원 강화, 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의사 소통권리시스템 구축, 홈헬퍼 지원 확대,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부족에 따른 서비스 공백으로 가족의 돌봄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 개발 및 전용 시설 설치·운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23년 까지 총 8개소 설치를 목표로 '20년 2개소 설치 975백만원의 예산이

4) '19. 3 6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7회)
- 20명(뇌병변장애인 2, 연구원·교수 5, 시설·단체·부모회 5, 시의원 1, 공무원 7)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명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특화된 모델 개발 및 전용 시설 설치·운영
 - 사업내용
 - 대 상 : 만 18세 이상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 입학정원 : 15명 이하 ※ 외상, 경직 등 휠체어 장애인 이용
 - 운영방법 : 연령별 구분 운영(18~30세 미만, 30세 이상~)
 - 주요내용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설치·운영(8개소)
 - 센터 설치 시 침대, 화장실, 외상용 강의실 등 뇌병변장애인 친화적 시설 설치
 -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기본 교육과정,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 뇌병변장애에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 운영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예산 지원
- ※ 센터 규모, 지원인력, 센터 명칭, 운영방법 등 '19년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세부내용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975,000	(x-) 97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0	(x-) 375,000	(x-) 375,000	비전센터 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 0	(x-) 0	(x-) 600,000	(x-) 600,000	비전센터 설치비

(2) 검토의견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외상, 경직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함에 따라, 신체적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가 필요⁵⁾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장애인시설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 특성에 맞는 전용 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예산 반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진행된 FGI를 통해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의 최우선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 8.19.~ 9.23)

- ▶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은 **전체 주간보호시설 127개소 1,585명 중 6개소 65명**
- ▶ 전체 주간보호시설 뇌병변장애인 대기자 : 211명으로 추정
- ▶ 시설 이용 전 **평균 대기기간 : 30.3개월**
- ▶ **주간보호시설의 20%**가 뇌병변장애인을 **타 시설에 의뢰**하거나 **이용 거부**
사유 : 돌봄 인력 부족(28.6%), 협소한 공간·편의시설 미흡(19%), 전문 인력(간호사 등) 부재(4.8%) 등

❖ FGI(뇌병변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현장 종사자(12명, '19. 6.13/ 6.25)

순위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애로사항	종사자 애로사항
1	장애인 활동 공간 협소(휠체어 이동 공간 미확보)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2	편의시설 및 공간 부족(신변처리실, 휴식 침대 등)	정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과중
3	맞지 않는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장애인 활동 공간 협소(휠체어 이동 공간 미확보)
4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인력 대비 과도한 행정업무
5	연령 및 기간에 따른 이용 제한	장애인 부모와의 이견·마찰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관련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9

- 한편, 집행부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금번 예산안은 연구용역 종료 이전 제출된 예산안으로 시설설치 소요 예산, 적정 운영비, 인력 구성 등 사업 시행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 등이 연구 결과를 세심히 반영하여 추진되기 어려운 시간으로 판단됨.

5) 외상, 경직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 및 회전반경 고려(1인 최소면적 9.9㎡)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서울시복지재단, 2019)

- 이는 앞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필요성에서 언급되었던 타 장애유형과 구별되는 뇌병변 장애의 특수성(휠체어 이동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으로 실제 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과대 또는 과소 편성되었을 우려가 있고,
- 센터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른 필수 요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사업량 조정 등을 통해 센터의 완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증감사업

가)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서 561p.)

(1) 현황

-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시·구비 매칭의 공공일자리 사업임.
- '20년 예산은 총 25,547백만원으로 '19년 20,853백만원 대비 4,694백만원(28.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구비 매칭 일자리 참여 배정인원 증가⁶⁾(303명) 및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⁷⁾ 및 운영비 단가 상승과 장애인권익보호 및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비100% 일자리 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일자리 배정인원 200명 (복지형 100명, 시간제 100

6) '19년 2,240명⇒'20년 2,543명(2020년 예산 사업 설명서)

7) 최저임금 '19년 8,350원⇒'20년 8,590원(2020년 예산 사업 설명서)

명 증가)인력 추가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형 일자리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본예산	최종예산 (A)			
	자차단체경상보조금					18.2%
	일반형일자리	(x5,785,778) 12,535,852	(x5,785,778) 12,535,852	(x6,854,000) 14,850,334	(x1,068,222) 2,314,482	19.6%
	시간제일자리	(x959,864) 2,079,705	(x959,864) 2,079,705	(x1,148,207) 2,487,782	(x188,343) 408,077	13.8%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x239,008) 517,851	(x239,008) 517,851	(x329,478) 713,869	(x90,470) 196,018	18.5%
	복지일자리(매칭)	(x1,832,897) 3,971,277	(x1,832,897) 3,971,277	(x2,086,040) 4,519,754	(x253,143) 548,477	37.9%
	사회복지사업보조		(x1,398,822) 1,748,528	(x1,665,706) 2,976,163	(x266,884) 1,227,635	(x19.1%) 70.2%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x1,398,822) 1,748,528	(x1,398,822) 1,748,528	(x1,665,706) 2,082,133	(x266,884) 333,605	19.1%
	복지일자리	(x-) 0	(x-) 0	(x-) 301,020	(x-) 301,020	100.0%
	시간제 일자리	(x-) 0	(x-) 0	(x-) 593,010	(x-) 593,010	100.0%

(2) 검토의견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신규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편성된 시간제 일자리(100명)와 복지일자리(100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중 전일제일 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구가 수행주체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지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음.
-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복지일자리 및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운영중이며, 일자리 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만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 편성 운영중인데 이는 복지부 지침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직접수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사)대한안마사 협회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3-7.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직접수행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 민간위탁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무계약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 단, 지역여건상 위탁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	(사)대한안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나 단체 위탁 가능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2018년 사업수행기관에 우선 위탁 고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제시된 기관이 아닌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사전협의 필요

*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동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특성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에 사업추진 자율성이 주어지는 예산과목으로의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⁸⁾ 지침 및 고용노동부 지침⁹⁾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의 원칙,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8)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9) 2019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바.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및 장애 이동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예산 6,691억 1백만원에서 12.1% 증액된 7,497억 8천 6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97,570) 12,040,322	(×497,570) 14,833,890	(×0) 2,793,568	23.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385,364	4,056,338	670,974	19.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136,244,611) 275,537,485	(×179,844,387) 353,836,416	(×43,599,776) 78,298,931	28.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065,000	2,470,126	405,126	19.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435,000) 4,238,000	(×2,470,000) 7,573,688	(×1,035,000) 3,335,688	78.7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00,000) 500,000	(×3,030,000) 6,060,000	(×2,530,000) 5,560,000	1,112.0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704,204	1,317,961	613,757	87.2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110,000	554,000	444,000	403.6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805,064	2,571,704	766,640	42.5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장애인의료비 지원	(×3,220,815) 6,441,630	(×2,683,070) 5,366,140	(×△537,745) △1,075,490	△16.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9,100) 268,200	(×93,100) 232,200	(×△16,000) △36,000	△13.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112,413	2,661,811	△3,450,602	△56.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83,966) 365,507	(×△65,151) 192,883	(×△18,815) △172,624	△47.2
□ 신규사업				
지역사회 장애인·비장애인 관계형성 기반 구축(시민참여)	0	15,000	15,000	100.0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0	470,900	470,900	100.0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0	884,934	884,934	100.0

1) 주요 증감사업

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서 776p.)

(1) 현황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 홍보,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구비 매칭 사업임.
- '20년 예산은 총 2,571백만원으로 '19년 1,805백만원 대비 766백만원 (42%)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된 서울시장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31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 692백만원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9 최종예산 (A)	2020 예산(안) (B)	증감 (B-A)	주요증감 사유
계	(x-) 1,805,064	(x-) 2,571,704	(x-) 766,640	
사무관리비	(x-) 27,550	(x-) 27,550	(x-) 0	
사회복지 사업보조	(x-) 378,696	(x-) 418,715	(x-) 40,019	○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센터에서 직접 고용하여 장기 일자리로 변경 - 인건비 : 증 25,430천원 (시센터 1명), 운영비 : 증 6,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398,818	(x-) 2,125,439	(x-) 726,621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구센터 36명) - 인건비 25,430,284원*36명*65% =595,046천원 -운영비 500,000원*12월*25개소*65% =97,500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편의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년 9월 기준 145명의 모니터링단이 자치구에 배치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부사업명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 모니터링단: 장애인 145명(구별 4~6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 ※ 자치구가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하여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매년 말)
- 주요내용
 -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추진방법
 - 5년 주기 실태조사(전수조사, 보건복지부 총괄)
 - 최근 5년간 사용승인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해 관리 실태조사
 - 매년 모니터링 실태조사(전수 또는 표본조사, 자치구별 4~7명)
 -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의무설치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 소요예산: 약 2,460백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 비용부담: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예산(자치구 집행)
- 19년 추진실적(9월말 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교육 : 145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등 : 11,125건

구 분	계	불법주차 계도	주차구역 홍보	민관합동점검 (보건복지부)	비고
센 터	11,125	11,037	88	-	모니터링단

(2) 검토의견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서울형무장애건물 인증 사업,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등을 반영한 시센터 인건비, 자치구 센터 인건비 등에 대한 예

산 편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신규 편성된 시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예산(31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692백만원)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모니터링 요원 추가 배치 필요성 관련〉

- 자치구 모니터링단 추가 배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실시한 의견 조회¹⁰⁾에 따른 자치구의 의견 회신 결과를 살펴보면,
 - 인건비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17개 자치구가 시비 100% 지원, 6개구가 시비 70% 지원을 요청하여 집행부의 계획(시비 65%지원)보다 높은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신규 인원 배치예정 22개 자치구(시센터포함) 중 17개 자치구가 시비 100% 요청)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의견으로는 매년 국비 지원 일자리 인원이 증가¹¹⁾하고 있으므로 기존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업무비중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기술직 인력의 추가 채용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어,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로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 추가 배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10)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문요원 선발관련 의견제출」(장애인자립지원과-5124,2019.10.15.)

- 주요내용 : 자치구별 모니터링 요원 중 1~2명을 선발하여 모니터링단 지도요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비율 등

11) 연도별 국비지원 일자리 증가현황 : '18년 1875명 → '19년 2240명 → '20년 2543명

출처: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 재구성

◆ 참고 : 국비지원 장애인 일자리 배정 현황('19년, '20년)

구분	참여자 인원('19년→'20년)	증가인원
합계	2240명→2543명	303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매칭)	110명→125명	15명
시간제 일자리(매칭)	258명→300명	42명
복지 일자리(매칭)	1,044명→1,155명	111명
일반형 일자리(매칭)	778명→896명	11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매칭)	50명→67명	17명

출처 : 2020년 복지정책실 예산 사업 설명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재구성

- 또한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 분담비율을 65:35로 제출하였으나, 17개 자치구가 구 예산 편성시기의 경과 등을 사유로 시비 100%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시 시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문요원 선발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요약

- 대 상 : 26개 기관(시 편의지원센터 1개소, 25개 자치구)
- 기 간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문요원 선발관련 의견 제출(2019.10.15., 10.18)
- 의견 수렴 결과
 - 추가 배치 희망 모니터링 전문요원 수

인원(명)	0	1	2	4	비고
자치구 수	4	10	11	1	

- 비용 부담에 대한 시구 매칭 비율

매칭비율(시:구)	65:35	70:30	100	비고
자치구 수	-	6	17	3개 자치구 의견없음

-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

- 매년 일자리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대로 장애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채용을 한다면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모니터링단원은 장애로 모니터링 전문요원으로 활용에 어려움)
-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기술직 직원이 검수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건이 많아 모니터링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술직 직원을 추가로 총원 요망

〈재정지원 일자리 지침 적용 여부〉

- 한편, 「2019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 사업을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취약 계층이 반복적으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의 신규 모니터링 요원 단원 배치 기준(안)¹²⁾에 따르면 자치구 모니터링 전문요원을 기존 1~2년간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한 단원 중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 이는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 기관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목적과 달리 반복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양산할 우려가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문요원 선발관련 의견제출」(장애인자립지원과-5124,2019.10.15.)

- 주요내용 : 자치구별 모니터링 요원 중 1~2명을 선발하여 모니터링단 지도요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비율 등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목적]

- 합동지침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직접 일자리사업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 것
 -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이 합동지침의 적용 대상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합동지침의 세부내용을 사업지침 및 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 합동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목표는 '취업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 그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였으며

[사례] ·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비율 63.7%(‘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반복 참여자를 양산하고 있었음

[사례] ·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 평균 16.9%(‘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반복참여자 비율 39.2%(‘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이에 따라 본 합동지침의 목표는
 - (1)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최대한 늘리고,
 - (2) 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 (3)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정 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 원 칙

-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바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를 정부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

사.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는 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노숙인 자활지원 및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2019년 최종 예산 1,678억 9천 9백만원에서 20.0% 증액된 2,014억 5천 3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거리노숙인 보호	(×65,000) 7,431,027	(×65,000) 9,670,892	(×0) 2,239,865	30.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2,735,813) 7,347,075	(×2,877,061) 8,482,479	(×141,248) 1,135,404	15.5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194,460) 588,920	(×1,513,054) 3,032,708	(×1,318,594) 2,443,788	415.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609,264) 7,309,940	(×5,197,379) 9,903,871	(×588,115) 2,593,931	35.5
자활근로사업 지원	(×58,536,246) 84,691,973	(×74,700,600) 109,560,880	(×16,164,354) 24,868,907	29.4
희망키움통장 I	(×1,572,000) 2,362,500	(×2,066,000) 3,107,322	(×494,000) 744,822	31.5
희망키움통장 II	(×4,084,410) 7,012,100	(×5,207,000) 8,880,000	(×1,122,590) 1,867,900	26.6
청년희망키움통장	(×1,653,000) 2,520,144	(×2,022,000) 3,088,800	(×369,000) 568,656	22.6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5,134,253	3,616,754	△1,517,499	△29.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229,919	9,868,978	△1,360,941	△12.1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1,108,316	900,256	△208,060	△18.8
자활장려금	(×4,538,221) 6,659,782	(×3,365,717) 4,936,385	(×1,172,504) △1,723,397	△25.9
□ 신규사업				
청년저축계좌	(×0) 0	(×1,503,000) 2,229,000	(×1,503,000) 2,229,000	100.0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9.4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I·II는 정부매칭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을 반영할 결과임.

1) 주요 증감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서 855p.)

(1)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25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25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99억 4백만원을 예산 편성함
- '19년도 지역자활센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11억 1백만원 증액) 77억 9천 6백만원 및 처우개선비 15억 9천 2백만원, 종사자 복지수당 4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단가 상승분(10호봉 미만 250천원, 10호봉 이상 330천원)을 반영하였음.

(2)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문제점

-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임금표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임금표의 적용을 받는 바,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표를 적용받는 시설에 비해 종사자 임금의 87 수준의 임금을 받음.
-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임금표의 적용을 받으나, 서울시가 국비시설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방식으

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 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 2020년 제출된 예산(안)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기준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반영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음.
- 현재 서울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사용하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 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95%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임.

중앙부처	시설 유형	인건비 기준	
보건복지부 (594)	노인양로시설(7), 노인보호전문기관(3), 장애인거주시설(45), 정신요양시설(3), 노숙인재활·요양시설(2), 여성노숙인시설(2), 지역자활센터(30)	92	보건복지부
	이동청소년그룹홈(60), 지역아동센터(435), 이동보호전문기관(7)	502	인건비기준 없음
여성가족부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가정위탁지원센터(1)	25	여성가족부

(3) 검토의견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고부담 증액 또는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제로 통합운영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273명)의 처우개선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자활사업(일자리) 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나,
-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

하여 서울시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차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짧은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다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인건비 기준에 따른 단일임금체계로의 체계 개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판단됨.

〈지역자활센터 시설·인력 현황〉

- 시설현황: 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

구 분	개 소	인 원	비 고
지역자활센터	30개	284명	정규직 162명, 비정규직 122명
자활근로사업단	304개	3,440명	수급자 91%, 차상위 9%
자활기업	158개	1,177명	수급자 27%, 차상위 6.2%, 저소득층 66.7% ※ 저소득층은 수급자 → 탈수급

- 인력현황

합 계	센터관리·운영	자활사업담당	사례관리	자활사업전문가
284	90	85	50	59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서 881p.)

(1) 현황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I·II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I 은 31억 7백만원(전년대비 31.5% 증

액), 희망키움통장Ⅱ 88억 8천만원(전년대비 26.5%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0억 8천 9백만원(전년대비 22.6% 증액)이고 2020년 신규 편성된 청년저축계좌사업은 22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자활지원과 통장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 감 (B-A)	변화율
희망키움통장 I	(×1,572,000) 2,362,500	(×2,066,000) 3,107,322	(×494,000) 744,822	31.5
희망키움통장Ⅱ	(×4,084,410) 7,012,100	(×5,207,000) 8,880,000	(×1,122,590) 1,867,900	26.6
청년희망키움통장	(×1,653,000) 2,520,144	(×2,022,000) 3,088,800	(×369,000) 568,656	22.6
청년저축계좌	(×0) 0	(×1,503,000) 2,229,000	(×1,503,000) 2,229,000	100.0

(2) 청년통장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 희망키움통장 I · II,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는 국가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통장사업으로 2020년 신규로 신설된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업의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생계수급 청년들의 생계급여지원 중단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자립의지 약화 등으로 인한 탈수급 기피 및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2019년 10월말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 I 참여자 유지현황은 847가구(유지 474가구, 신규 373가구)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Ⅱ 참여자 유지현황은 7,609가구(유지 4,551가구, 신규 3,048가구)임
- 청년통장사업의 목표가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자산형성사업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고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 및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씨드머니 마련을 통하여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 단순히 통장사업의 확대보다는 각 통장사업에 중복되는 대상자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보건복지부가의 제도개선에 따르면, 가입대상 연령을 만 15세~39세로 확대함에 따른 3,900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른 4,000명이 신규대상자로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서울시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실질적 시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검토의견

- 사업대상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유사 청년대상사업(청년창업자금대출, 공공지원주택 등)이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까지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제도수혜자를 확대하여 30대 전 연령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¹³⁾와 같이 34세로 청년연령 상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탈수급 지원 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연령확대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2019년도 집행현황 및 제도변경계획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13)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중소기업 등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2.5만원(2년형) / 16.5만원(3년형)을 본인이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 매칭지원으로 2년형 1,600만원(본인 300만원), 3년형 3,000만원(본인 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활지원과 통장사업 개요〉

'19년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 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가입 및 유지기준(천원)		409~2,256	697~2,256	902~2,256	1,107~2,768	1,312~3,280	1,516~3,792
	최대 근로소득액	10만원 적립	232,000	395,000	511,000	627,000	627,000	627,000
		5만원 적립	117,000	200,000	259,000	317,000	317,000	317,000
	교육급여(중위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구분	희망키움 I ('10.4월 ~)		희망키움 II ('14.7월 ~)		내일키움 ('13.3월 ~)		청년희망키움 ('18.4월 ~)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자활근로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가입 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상 유지	
본인저축액	5·10만원(3년)		10만원(3년)		5·10만원(3년)		없음	
지원 내용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수익비례)		-근로소득·사업 공제금(10만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비례 일정비율 (평균 334천원, 최대 627천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소득비례 일정비율 (평균 300천원, 최대 496천원)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 적립 (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사업단 수익금 적립 (최대 15만원)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562만원~2,60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12만원~1,620만원+이자		1,440만원~2,145만원+이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아님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3년 이내 탈수급 -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 대학교 입학, 자격증 취득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아님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 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모집 기간	2월~11월 총10회		2월~10월 총4회		2월~11월 총10회		2월~11월 총10회	
선발 방법	자치구 선정		추천 : 자치구 추천 선정 : 중앙자활센터		자치구 선정		자치구 선정	
수행 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19년 예산	2,363백만원		7,037백만원		555백만원		2,455백만원	
'19년 목표	847가구 (유지 474, 신규 373)		7,609가구 (유지 4,561, 신규 3,048)		879명 (유지 522, 신규 357)		929명 (유지 322, 신규 607)	
'19년 실적 (19.10월말 기준)	유지 721가구, 신규 161가구		유지 6,063가구, 신규 914가구		유지 895명, 신규 484명		유지 422명, 신규 127명	
매칭 비율 (국:사:구)	60:28:12		50:50:0		60:28:12		60:28:12	

※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의 소득은 노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IV. 기금운용 계획안

-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으며,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 기금은 그 성격상 안정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사업이 일반 예산 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미흡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방식보다는 일반회계 예산 항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음.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9 말 조성액 ①	2020 년도 조성계획			2020 년말 조성액 ⑤ = ① + 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 = ② - ③	
총 계		320,833	8,576	15,651	-7,073	313,760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6,102	3,582	7,511	-3,928	42,174
	노인복지계정	12,863	356	952	△596	12,267
	장애인복지계정	25,491	2,796	5,525	△2,729	22,762
	자활계정	7,748	430	1,034	△603	7,14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4,731	4,994	8,140	△3,145	271,586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12억 1천 8백만원(30.3%)으로 전년대비 5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8억6천2백만원(전년대비 △5억6천2백만원), 기타수입 6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6백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9천4백만원(전년대비 증 6천9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218,788	1,748,007	△529,219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862,706	1,425,202	△562,496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94,188	224,846	69,342
기타수입	61,894	97,959	△36,065

- 지출내역을 보면, 비용자성사업비 8억4천9백만원(전년대비 증 2천8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전년대비 △5천만원)이고 예치금 2억6천6백만원(전년대비 △5억7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218,788	1,748,007	△529,219
비용자성사업비	848,835	820,835	28,000
융자성사업비	100,000	150,000	△50,000
기본경비	3,000	3,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66,953	774,172	△507,219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138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3천만원이 감액(1.6%)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110억 9천만원(전년대비 △1억9천 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천 9백만원(전년대비 △3천8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3,886,799	14,115,980	△229,181
비용자성사업비	700,000	700,000	0
융자성사업비	4,800,000	2,300,000	2,500,000
기본경비	25,000	25,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8,361,799	11,090,980	△2,729,18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합 계	13,886,799	14,115,980	△229,18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316,162	2,316,162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1,090,980	11,281,947	△190,967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79,657	517,871	△38,214
기타수입	0	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138억 8천 7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 융자성 사업비 48억원(전년대비 증 25억원), 예치금 83억 6천 2백만원(전년대비 △27억2천9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37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천 3백만원이 감액(9.9%)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금회수수입 2억 5천 7백만원(전년대비 △2억6천7백만원), 예치금회수 33억 2천 8백만원(전년대비 △1억5천3백만원), 이자수입 1억 7천 4백만원(전년대비 증 5천 2백만원) 등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3,758,731	4,171,315	△412,58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56,873	523,913	△267,04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3,328,300	3,481,612	△153,312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73,558	121,545	52,013
기타수입	0	44,245	△44,245

- 지출계획 편성안은 37억 5천 9백만원(전년대비 △4억1천3백만원)으로 비
 용자성 사업비 8억2천9백만(전년대비 △1억9천1백만원), 예치금 27억2
 천5백만원(전년대비 △6억3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758,731	4,171,315	△412,584
비용자성사업비	828,700	638,015	190,685
용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0
기본경비	5,000	5,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725,031	3,328,300	△603,269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2,797억 2천 5백만원 전년대비 354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 2,413억 9천 1백만원(전년대비 증 327억5천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억 8천 9백만원(전년대비 증 26억9천7백만원), 기타수입 5백만원으로 되었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79,725,842	244,267,918	35,457,92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33,340,000	33,330,000	10,000
예치금회수	241,391,392	208,640,468	32,750,924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989,450	2,292,450	2,697,000
기타수입	5,000	5,00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2,797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4억 5천 8백만원 증액되었음. (무더위 쉼터 냉방비 증액 등)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 계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79,725,842	244,267,918	35,457,924
비용자성사업비	8,139,072	7,324,567	814,505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71,586,277	236,943,351	34,642,926
기타지출	493	0	493

-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과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11.5%, 2019년은 13.4% 증가한 반면, 예치금은 2016년 49.7% 감소하였다가 2017년 98.8% 증가하여 사실상 148.5%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 46.1% 감소하는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비해 예치금 비중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립금	적립금 총계	14,503	13,997	13,436	12,774	12,267	
	적립금 총계 증가율	△3.3%	△3.5%	△4.0%	△4.9%	△4.0%	
수입	합계	증감	△535	431	527	△545	△529
		전년대비증가율	△28.6%	32.3%	29.8%	△23.8%	△30.3%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지출	합계	증감	△535	431	527	△545	△529
		전년대비증가율	△28.6%	32.3%	29.8%	△23.8%	△30.3%
	지출액	금액	1,335	1,766	2,293	1,748	1,219
		전년대비증가율	△28.6%	32.3%	29.8%	△23.8%	△30.3%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38	△64	88	115	△22
		전년대비증가율	△4.4%	△7.7%	11.5%	13.4%	△2.3%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치금	증감	△497	494	439	△662	△507
	전년대비증가율	△49.7%	98.2%	44.0%	△46.1%	△65.5%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19년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83.3% 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은 24.6% 감소하였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립금	적립금 총계	24,961	24,588	25,682	25,491	22,762	
	적립금 총계 증가율	7.1%	△1.5%	4.4%	△0.7%	△10.7%	
수입	합계	증감	△1,979	△710	963	△454	△38
		전년대비증가율	△38.6%	△5.9%	41.4%	△13.8%	△1.3%
	출연금	증감	△2,00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100%	0.0%	0.0%	0.0%	0.0%
지출	합계	증감	198	△710	△504	831	2,500
		전년대비증가율	7.8%	△5.9%	△18.7%	37.9%	82.6%
	지출액	금액	2,725	2,698	2,194	3,025	5,525
		전년대비증가율	7.8%	△5.9%	△18.7%	37.9%	82.6%
수지총괄비교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186	1,000	△511	827	2,500
		전년대비증가율	7.4%	50.0%	△19.0%	38.1%	83.3%
	예치금	증감	429	△1,700	1,094	△191	△2,729
		전년대비증가율	4.8%	△18.1%	10.7%	△1.7%	△24.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 자활계정은 고유목적사업비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 감소를 보였으나 2020년 전년도에 비해 29.9% 증가하여 사실상 58.7%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음.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립금	적립금 총계	11,070	6,267	5,484	6,554	7,144	
	적립금 총계 증가율	4.4%	△43.4%	△12.5%	19.5%	9%	
수입	합계	증감	937	4,724	△5,529	731	781
		전년대비증가율	44.3%	154.8%	△71.1%	32.5%	26.2%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937	4,724	△5,529	731	781
		전년대비증가율	44.3%	154.8%	△71.1%	32.5%	26.2%
	지출액	금액	3,051	7,775	2,246	2,977	3,758
		전년대비증가율	44.3%	154.8%	△71.1%	32.5%	26.2%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226	5,187	△5,097	△339	191
		전년대비증가율	26.1%	476.7%	△81.2%	△28.8%	29.9%
	예치금	증감	711	△493	△401	1,070	591
		전년대비증가율	57.0%	△25.2%	△27.4%	100.6%	27.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4.6% 증가하였음.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립금	적립금 총계	275,920	277,226	279,759	274,731	271,586	
	적립금 총계 증가율	1.4%	0.5%	0.9%	△1.8%	△1.1%	
수입	합계	증감	△134,869	160,601	38,024	26,878	35,458
		전년대비증가율	△87.8%	855.8%	21.2%	12.4%	14.5%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134,869	160,601	38,024	26,878	35,458
		전년대비증가율	△87.8%	855.8%	21.2%	12.4%	14.5%
	지출액	금액	18,765	179,366	217,390	244,268	279,726
		전년대비증가율	△87.8%	855.9%	21.2%	12.4%	14.5%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사 업비	증감	755	35	2,099	3,024	814
		전년대비증가율	206.3%	3.4%	95.3%	70.3%	11.1%
	예치금	증감	15,144	161,046	35,863	23,854	34,643
		전년대비증가율	678.0%	995.3%	20.2%	11.2%	14.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복지정책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촘촘한 포용복지서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2019년도 대비 10.3% 증액 편성하였음.
-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을 정책별로 구분하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10.1%,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정책사업 6.6%,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정책사업 14.2%, 50+세대의 일자리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인생이모작 기반마련 정책사업 6.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도모 정책사업 11.4%,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정책사업 27.2% 등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
- 제출된 안건 중 돌봄특별시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돌봄 SOS센터’의 경우 ’19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사업 시행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본 예산 편성이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연구 등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르신 복지플래너의 경우 가정방문이 줄고, 내방상담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 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도 가정방문, 내방상담 모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의 찾동사업이 방문 중심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발굴된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활동 등)과 같은 직접일자리사업, 교육 이수 후에 취업 연계가 명확하지 않는 직업훈련사업에서 목표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와 연계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목표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음.
-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활성화 및 사업관리 강화, 전담 인력 처우 개선, 수행기관 평가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자리 매칭 사업의 명목으로 과다 추계를 할 경우 필요한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 등의 시민에게 필요하거나 잠재적으로 필요가 예상되는 사업들이 축소 되어 운영되는 등의 시민에게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업량 및 예산추계에 대한 사전 매칭비율 확정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복지정책실 산하의 재단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19.4% 증액 편성되었는 바,
 - 복지재단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시 복지시정에서의 역할은 인정되나, '19년 9월 기준 현재 복지재단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고,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집중되는 등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료됨.

- 서울시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이 복지재단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예산 또한 복지재단에 집중되는 등 서울시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데 비해 복지재단의 사업방향이나 점검에 있어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에 있어서 미비할 수 있다는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금번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 좋은돌봄·좋은일자리를 표방하고 출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75% 증액 편성되었음
 -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되어지나, 재단의 설립 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므로 운영의 내실화 확보를 위해 종합재가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초 계획안 대로 확대하는 것보다 ‘20년도에 설치 예정인 종합재가센터의 경우는 자치구의 특성과 사회의 돌봄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이며,
 - 돌봄서비스 수혜자에게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개소된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구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사례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겨짐.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도 수탁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제공되어질 운영모델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규모의 내실화를 통하여 공공의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15.5%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지난 4년간 서울시 중장년 인생이모

작을 위한 복지시정에 특수목적의 재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짐.

- 50플러스재단은 새로운 인생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일과 활동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일모델을 제시하고 참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형태가 교육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모델을 통해 중장년세대가 얼마만큼의 취·창업을 하였는지, 그리고 취·창업을 하였다면 재단이 개발한 일자리모델이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함.
- 신중년의 인생이모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한 재단만큼 단순히 50+세대를 위한 거대한 어른들의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신중년인 5060세대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오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의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단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
- 통계청이 5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2.8%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481만9000명으로 지난해 5월(446만5000명)보다 35만4000명이나 늘어나는 등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신중년, 신노년이 더 이상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짐.
- 현재 50플러스재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한 문제가 조직 및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이므로 50플러스재단이 금번에 제출한 20년 예산(안) 중 재단본부의 이전으로 편성한 예산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 보이지 않으며,

- 재단의 외형의 확대는 지양해야하며 현재의 각 캠퍼스의 관리·감독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각 캠퍼스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리되 서울시 50+정책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단본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변경을 하는 등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판단됨.
- 따라서 재단이 금번에 제출한 20년 예산(안)은 그동안의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등의 문제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울시 50+ 중장년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연구 등 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예산의 특성상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나 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태도가 요망되며, 금번처럼 과다 추계를 할 경우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등 복지사업의 시급성 및 과학적인 필요예산추계 등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예산추계와 관련한 사전 매칭비율 확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금번에 제출된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들은 돌봄과 일자리를 매개로 하여 사업수혜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그 긴급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어지나,
-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볼모가 아니며 공공서비스는 공조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업무 영역이므로 서울시는 산하재단의 복지에 산 및 복지업무가 ‘민간으로의 책임 회피’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재단에 대하여 감독기능의 재설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판단됨.

- 이를 위해 복지정책실 내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선행 이루어져야하며 관련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복지정책실 내 잦은 인사이동은 복지업무의 차질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에게 부정적 결과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타 부처에 비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인사 시에 가산점 부여 등 서울시 차원 복지 공무원부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복지정책실은 예산수립 시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촘촘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연례적·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및 수혜대상자에게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과 관련한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